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19.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1
-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상 문제점 13
 - 1-1. 환경부 하수도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15
 - 1-2.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보조금 재재이월 문제 19
 - 1-3.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 실적 저조 25

III. 개별 사업 분석 / 28

-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저조한 수납률 문제 28
- 2.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실집행률 하락 32
- 3.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부진 36
- 4. 도시침수대응 사업의 집행부진 및 연례적인 이월 문제 40



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사업 추진절차 개선 필요 ...	45
6.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의 추진절차 및 투자조합 결성 지연 등 사업지연 주의 ...	49
7.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 감독 강화 필요	52
8. 환경부 연구용역비 부적정 집행 개선 필요	57
8-1. 환경성질한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의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연구 용역비 과다이월 주의 필요	57
8-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부진 및 연례적 이월 해결 필요	60
9.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연례적인 과다이월· 불용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	63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	67
11.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71
12. 환경부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75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79

[고용노동부]

I. 결산 개요 / 83

1. 현 황	83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1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3



II. 주요 현안 분석 / 95

1. 2018년 추경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사업 결산 분석 95
 - 1-1.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정지출 부담 증가 및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96
 - 1-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 관리 필요 100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105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 구조 개선 필요 112

III. 개별 사업 분석 / 117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검토 117
2. 청년센터 운영 사업 성과 저조 124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의 참여율 제고 필요 등 129
4. 사회적기업 성과공유대회 과다 집행 및 적정 비목 계상 필요 134
5.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연계 취업 관리 필요 136
6. 고용평등상담실의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139
7.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 성과 관리 필요 143
8.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집행 부진 및 개선 필요 148
9.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신청 저조 153
10.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사업 집행 부진 157
11.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집행 160
12.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불용 발생 등 163



[기상청]

I. 결산 개요 / 169

- 1. 현 황 169
-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3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4

II. 개별 사업 분석 / 175

-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의 위약금 징수 철저 필요 175
- 2. 항공기상정보제공 수수료의 생산비용 대비 회수율 제고 필요 178
- 3. 기상청 시험연구비 집행 상 문제점 개선 필요 182
- 4. 기상청 정보화사업 예산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 주의 187
- 5.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91
- 6.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중 APEC 기후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195
- 7.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인건비 전용 최소화 노력 필요 198



환경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7,969억 6,200만원이며, 6조 732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5.1%인 5조 1,668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8,588억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74억 8,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8	228	689	940	809	131	0	86.1
환경개선특별회계	4,786,267	4,793,967	4,793,967	6,034,077	5,129,651	856,940	47,486	85.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00	500	500	4,814	4,193	621	0	87.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806	1,806	1,806	22,582	21,435	1,147	0	94.9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0,796	10,767	29	0	99.7
합계	4,788,801	4,796,501	4,796,962	6,073,209	5,166,855	858,868	47,486	85.1

자료: 환경부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조 9,080억 6,500만원이며, 이 중 98.4%인 9조 7,45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735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3억 8,2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388,644	3,396,344	3,556,934	3,545,530	6,095	5,308	99.7
환경개선특별회계	4,786,267	4,793,967	4,912,060	4,769,625	66,532	75,903	97.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677	84,177	84,177	84,177	0	0	1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36,657	543,155	555,835	554,153	290	1,391	99.7
지역발전특별회계	770,186	770,186	799,059	791,642	636	6,780	99.1
합계	9,465,431	9,587,829	9,908,065	9,745,127	73,553	89,382	98.4

자료: 환경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422억 8,300만원이며, 1조 2,315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2.8%인 1조 1,426억 800만원을 수납하고 882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억 1,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 기금	544,957	544,957	544,957	661,374	615,707	45,182	485	93.1
낙동강수계관 리기금	250,720	250,720	250,720	289,636	267,569	21,994	73	92.4
금강수계관리 기금	125,550	125,550	125,550	142,551	130,874	11,613	64	91.8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7,233	87,233	87,233	100,200	92,236	7,953	11	92.1
석면피해구제 기금	33,823	33,823	33,823	37,821	36,222	1,515	84	95.8
합계	1,042,283	1,042,283	1,042,283	1,231,582	1,142,608	88,257	717	92.8

자료: 환경부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525억 4,300만원이며, 이 중 108.6%인 1조 1,42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7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8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44,957	544,957	553,113	615,707	13,639	16,767	111.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0,720	250,720	251,360	267,569	1,808	1,322	106.4
금강수계관리기금	125,550	125,550	126,323	130,874	1,458	1,655	103.6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7,233	87,233	87,772	92,236	648	910	105.1
석면피해구제기금	33,823	33,823	33,975	36,222	147	157	106.6
합계	1,042,283	1,042,283	1,052,543	1,142,608	17,700	20,811	108.6

자료: 환경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143억 1,100만원 (7.2%)이 증가한 6조 1,46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66억 8,900만원(2.3%)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341,508	4,788,801	4,796,501	5,166,855	370,354	△174,653
기금	952,045	936,052	936,052	980,009	43,957	27,964
합계	6,293,553	5,724,853	5,732,553	6,146,864	414,311	△146,689

자료: 환경부

2018회계연도 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165억 300만원(1.7%)이 증가한 6조 8,809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94억 5,700만원(0.4%) 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915,382	5,708,152	5,822,850	5,967,602	144,752	52,220
기금	936,096	941,582	941,582	913,333	△28,249	△22,763
합계	6,851,478	6,649,734	6,764,432	6,880,935	116,503	29,457

자료: 환경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기준 환경부의 자산은 11조 4,157억 3,500만원, 부채는 916억 9,700만원으로 순자산은 11조 3,240억 3,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2,306억 7,200만원, 투자자산 6,861억 4,400만원, 일반유형 자산 4조 2,729억 5,8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85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8,071억 3,100만원(103.5%) 증가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된 댐,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5조 1,952억 1,300만원 증가, 토지, 구축물, 건물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5,762억 3,500만원 증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280억 4,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43억 3,100만원, 장기차입부채 340억 500만원, 장기충당부채 5억 7,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7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70억 1,800만원(28.8%)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상환으로 장기차입 부채 294억 3,700만원 감소, 유동성 정부 내 장기예수금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47억 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1,415,735	5,608,604	5,807,131	103.5
Ⅰ. 유동자산	1,230,672	1,202,623	28,049	2.3
Ⅱ. 투자자산	686,144	685,672	472	0.1
Ⅲ. 일반유형자산	4,272,958	3,696,723	576,235	15.6
Ⅳ. 사회기반시설	5,195,213	-	5,195,213	-
Ⅴ. 무형자산	22,229	14,667	7,562	51.6
Ⅵ. 기타비유동자산	8,519	8,918	△399	△4.5
부 채	91,697	128,715	△37,018	△28.8
Ⅰ. 유동부채	54,331	59,032	△4,701	△8.0
Ⅱ. 장기차입부채	34,005	63,442	△29,437	△46.4
Ⅲ. 장기충당부채	572	3,453	△2,881	△83.4
Ⅳ. 기타비유동부채	2,789	2,789	-	-
순 자 산	11,324,038	5,479,889	5,844,149	106.6
Ⅰ. 기본순자산	3,898,124	3,805,876	92,248	2.4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352,711	1,390,658	3,962,053	284.9
Ⅲ. 순자산 조정	2,073,203	283,354	1,789,849	631.7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조 7,831억 9,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조 4,363억 8,000만원, 관리운영비 3,292억 9,400만원, 비배분비용 3,774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50억 9,100만원, 비배분수익 3,458억 6,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489억 8,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362억 9,500만원(8.7%) 증가한 6조 7,321억 7,800만원이며,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된 프로그램의 총원가와 관리운영비 증가에 기인한다.

총 16개의 프로그램 중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2조 5,609억 9,7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프로그램(8,225억 4,800만원), 4대강유역관리 프로그램(7,371억 1,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499억 3,300만원과 경비 1,793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전기징수결의 착오정정 등 기타비용 2,038억 5,600만원과 대손상각비 1,033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371,289	6,014,897	356,392	5.9
가. 프로그램 총원가	6,436,380	6,123,145	313,235	5.1
나. 프로그램 수익	65,091	108,248	△43,157	△39.9
II. 관리운영비	329,294	247,851	81,443	32.9
III. 비배분비용	377,456	354,081	23,375	6.6
IV. 비배분수익	345,861	420,946	△75,085	△17.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732,178	6,195,883	536,295	8.7
VI. 비교환수익 등	948,987	908,241	40,746	4.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783,191	5,287,642	495,549	9.4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5조 4,798억 8,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1조 3,240억 3,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조 8,441억 4,900만원(106.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5조 7,831억 9,1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기초 대비 6조 5,906억 8,100만원,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5조 36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11조 7,830억 4,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조 1,923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4조 9,537억 8,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739억 2,2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80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479,889	5,258,310	221,579	4.2
II. 재정운영결과	5,783,191	5,287,642	495,549	9.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590,681	5,512,762	1,077,919	19.6
IV. 조정항목	5,036,660	△3,541	5,040,201	142.3
V. 기말순자산(I-II+III+IV)	11,324,038	5,479,889	5,844,149	106.6

자료: 환경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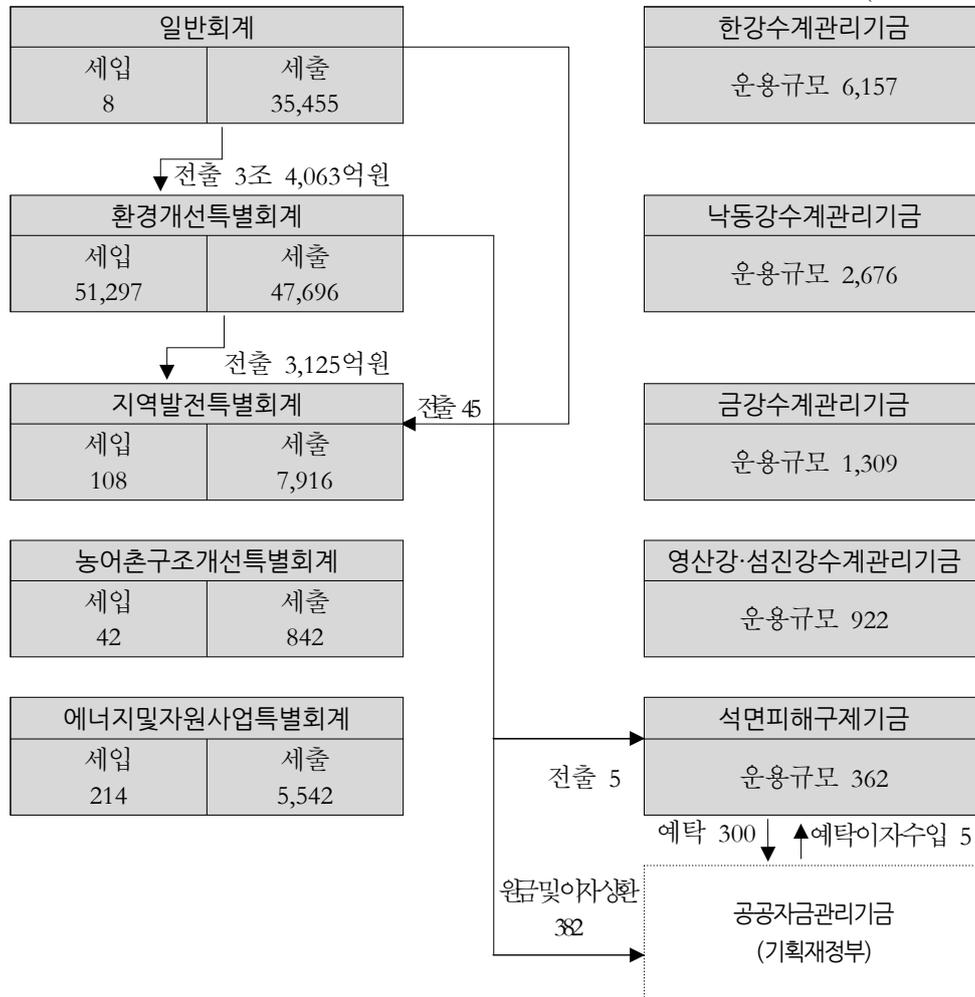
2018회계연도 환경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지역특별회계로 각각 3조 4,063억원, 45억원이 진출되었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3,12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82억원 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탁하였고, 예탁이자 수입으로 5억원을 받았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② 미래 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③ 국가전략프로젝트(R&D) 사업 등이 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고려하여 135억원이 감액(2,623억원 → 2,488억원)되었고,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라 20억원이 감액(150억원 → 130억원)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R&D)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을 감안하여 25억원이 감액(82억원 → 57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 ②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이 있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저감 관리 대상 선정을 위한 연구비 예산 2억원이 증액(342억원 → 344억원)되었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은 익산 석산복구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비를 위하여 15억원이 증액(13억 → 28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②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이 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추진할 것”,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심각하게 오염된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니퇴적물 제거 등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이 낮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38억원이 감액(4,713억원 → 4,475억원)되었다.⁴⁾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5.

환경부는 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 저감사업 강화**, ② **자연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③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④ **기초시설 투자 예산을 조정하여 환경예산 내실화 도모**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도 관련 사업(하수관로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 확충)의 지방자치단체 실행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집행가능성, 사업계획 수립 내용 및 사업 변경의 필요성 검증 등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미수납 장기화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납부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등 법정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으로 사업장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허용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 적용대상 확대('20.4월~)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 할당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은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을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상결과의 예측불가능성, 양국 관계의 변화 등 대외적 여건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문제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과다 이월과 불용 등 실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사업 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리상 문제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¹⁾, 공공폐수처리시설²⁾, 하수처리장³⁾ 등 환경기초시설⁴⁾의 원활한 설치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총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조 7,509억 9,600만원 중 98.3%인 1조 7,21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지연, 계획 변경, 각종 행정절차 지연 및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재재이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교부액 1조 7,215억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999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5,215억 2,400만원 중 1조 5,44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9,768억 1,0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하는 등 실적행률이 61.3%로 낮은 실정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8-318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232-302

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48-313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생략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회계연도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피보조기관 실행내역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면단위하수 처리장설치 (농특)	78,341	78,841	78,841	78,841	78,841	37,875	116,716	78,301	67.1	36,441	1,973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농특)	5,336	5,336	5,336	5,336	5,336	3,818	9,154	5,886	64.3	2,799	469
하수관로정비 사업(환특)	687,832	688,532	691,615	676,415	676,415	359,831	1,036,246	632,365	61.0	374,283	29,597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환특)	294,273	298,873	300,302	300,302	300,302	162,214	462,516	290,757	62.9	166,296	5,462
하수처리장 확충(환특)	336,187	337,387	337,387	337,387	337,387	147,929	485,316	227,352	46.8	249,798	8,166
하수도용자 원리금상환 (환특)	20,255	20,255	20,255	20,255	20,255	0	20,255	19,247	95.0	990	18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 (환특)	54,190	54,190	54,190	49,990	49,990	15,128	65,118	45,144	69.3	10,739	9,235
공공폐수 처리시설 (환특)	76,614	76,614	73,072	65,450	65,450	37,992	103,442	80,845	78.2	20,931	1,667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환특)	35,247	35,247	35,247	35,247	35,247	1,029	36,276	18,521	51.1	17,75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환특)	124,978	124,978	127,278	124,833	124,833	28,073	152,906	117,606	76.9	34,966	334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환특)	2,700	2,700	2,700	2,700	2,700	1,179	3,879	2,162	55.7	1,717	
하수관로정비 (세종) (환특)	18,840	18,840	18,840	18,840	18,840	4,633	23,473	21,046	89.7	883	1,545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세종) (지특)	3,186	3,186	3,186	3,186	3,186	73	3,259	3,113	95.5	0	14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지특)	2,747	2,747	2,747	2,747	2,747	221	2,968	2,368	79.8	417	183
합계	1,740,726	1,747,726	1,750,996	1,721,529	1,721,529	799,995	2,521,524	1,544,713	61.3	918,015	58,795

자료: 환경부

1-1. 환경부 하수도 사업의 연례적 실적행 부진

가. 현황

하수도사업은 국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과 하천의 수질개선 도모를 위하여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63조⁵⁾를 근거로 하수관로 정비,⁶⁾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⁷⁾ 하수처리장 확충⁸⁾ 등 하수도 설치·보수를 위한 사업을 지자체 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3개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합계는 1조 3,297억 9,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200만원과 예비비 45억 1,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3,360억 1,300만원 중 1조 3,191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3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 설치·보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계	1,323,299	1,329,799	1,702	0	4,512	1,336,013	1,319,126	98.7	1,491	15,396
하수관로 정비	687,832	688,532	0	△419	3,502	691,615	676,415	97.8	0	15,200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94,273	298,873	0	419	1,010	300,302	300,302	100.0	0	0
하수처리장 확충	341,194	342,394	1,702	0	0	344,096	342,409	99.5	1,491	196

자료: 환경부

5)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1

7)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2

8)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4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관련 3개 세부사업은 모두 하수관로 또는 하수처리장의 신설·개량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사업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예산 편성 첫 해에는 설계비(하수관로 정비 5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3억원 한도)만 지원하고, 다음 해부터 잔여국고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 신설 30~70%, 교체 및 개보수 20~50%,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시설용량 500m³/일 미만) 사업은 신설 70%, 개량 30%, 하수처리장 확충(시설용량 500m³/일 이상) 사업의 경우 10~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사업명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30%(광역시), 50%(도청 소재지), 70%(시·군) · 교체 및 개보수: 20%(광역시), 30%(도청 소재지), 50%(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70%, 개량 30% 	10~80%

자료: 환경부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16~2018) 하수관로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월 및 불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6년 68.5%에서 2018년 61.0%로 하락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64.7%에서 62.9%로 하락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또한 56.3%에서 46.8%로 하락하였다.

[2016~2018년 하수도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하수 관로 정비	2016	772,991	817,677	280,200	1,097,877	751,551	324,864	21,462	68.5
	2017	735,455	782,743	309,849	1,092,592	709,949	359,831	22,812	65.0
	2018	687,832	676,415	359,831	1,036,246	632,365	374,283	29,597	61.0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016	296,621	308,073	119,997	428,069	277,003	141,540	9,526	64.7
	2017	330,200	341,893	131,310	473,203	305,141	162,214	5,848	64.5
	2018	294,273	300,302	162,493	462,515	290,757	166,296	5,462	62.9
하수 처리장 확충	2016	336,606	329,698	168,964	498,662	280,554	198,504	19,603	56.3
	2017	248,693	248,693	186,850	435,543	277,905	147,929	9,709	63.8
	2018	336,187	337,387	147,929	485,316	227,352	249,798	8,166	46.8

자료: 환경부

특히, 2018년도 실적행률이 40%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지자체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24개(전체 145개 지자체 중 16.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24개(전체 지자체 122개 중 19.7%),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서 37개(전체 지자체 98개 중 37.8%)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집행부진은 사유지 통과, 영업 손실, 도로통제, 환경적 피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과 입지반대로 설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용지보상 협의, 지방비 확보 및 편성, 각종 인·허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도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집행점검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공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3개 사업의 2017회계연도 결산 실적행률이 50% 미만으로 부진하였던 100개 지자체의 2018회계연도 실적행률을

확인한 결과, 실집행률이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지자체가 19개(하수관로 정비 사업 5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3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11개), 20~60% 미만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가 49개(하수관로 정비 사업 19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9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11개) 등 총 100개 지자체 중 68개 지자체에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수도사업 실집행 부진 지자체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7회계연도 실집행 부진 지자체 수	2018회계연도 실집행률			실집행 부진 지자체 비율
		0% 초과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하수관로 정비	37	5	19	13	64.9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	3	19	9	68.8
하수처리장 확충	31	11	11	7	71.0
합계	100	19	49	29	68.0

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1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2개의 종료사업이 존재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 수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점검이나 조정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따라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 및 사업 변경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보조금 재재이월 문제

가. 현황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재재이월이 발생한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9개 세부사업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재재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회계연도에 지자체의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차년도 이월액 565억 9,700만원 중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8년으로 재이월된 예산은 447억 1,500만원이며, 특히 재이월된 예산 중 130억 6,500만원만이 2018회계연도에 집행되었고 나머지 316억 5,000만원은 2019년으로 재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⁹⁾

[2018회계연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재재이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차년도 이월액	2017년 재이월액	2018년 재재이월액
하수처리장 확충	13,046	12,154	11,634
하수관로 정비	17,716	11,407	5,327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118	4,312	2,889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513	3,513	2,107
도시침수대응사업	7,785	4,114	478
생태하천 복원사업	8,869	8,869	8,869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500	296	296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50	50	50
합계	56,597	44,715	31,650

자료: 환경부

9) 2018년 재재이월액은 2016년에 발생한 이월액 중 2019년으로 재재이월된 예산을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재재이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의 사업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환경기초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중 경남 사천시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보조금은 2016년 교부된 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 2017년 이월과 2018년 재이월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검토로 2억 9,600만원의 재재이월액이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경남 사천시	2016	500	0	500	0	500	0	0.0
		2017	500 (-)	500 (500)	1,000 (500)	204 (204)	796 (296)	0	20.4 (40.8)
		2018	512 (-)	796 (296)	1,308 (296)	0 (0)	1,308 (296)	0	0 (0.0)

주: (-)의 숫자는 2016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논산시와 해남군에서 보조금의 재재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산시의 경우, 2016년도 예산현액 23억 9,3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나 2017년에도 미집행되었으며, 2018년 14억 6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10억 8,700만원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재재이월되었다. 또한, 해남군은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1억 2,000만원의 예산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재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논산 노성농공 (1단계)	충남 논산시	2016	1,638	755	2,393	0	2,393	0	0
		2017	0	2,393	2,393	0	2,393	0	0
		2018	100	2,393	2,493	1,406	1,087	0	56.4
해남 화원	해남군	2016	0	1,120	1,120	0	1,120	0	0
		2017	0	1,120	1,120	0	1,120	0	0
		2018	0	1,120	1,120	0	1,120	0	0

자료: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한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84억 3,300만원의 예산이 재재이월된 청주시 사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교부액 26억 5,900만원 중 17억 4,500만원이 재재이월된 고성군 사례 등 6개 지자체에서 총 116억 3,400만원이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019년으로 재재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하수처리장 확충	인천 광역시	2016	500	0	500	0	500	0	0.0
		2017	310 (-)	500 (500)	810 (500)	195 (195)	615 (305)	0	24.1 (39.0)
		2018	163 (-)	615 (305)	778 (305)	28 (28)	750 (277)	0	3.6 (9.2)
	경기 양평	2016	500	0	500	14	486	0	2.8
		2017	886 (-)	486 (486)	1,372 (486)	183 (183)	1,189 (303)	0	13.3 (37.7)
		2018	0	1,189 (303)	1,189 (303)	80 (80)	1,109 (223)	0	6.7 (26.4)
	충북 청주	2016	6,572	1,861	8,433	0	8,433	0	0.0
		2017	3,011 (-)	8,433 (8,433)	11,444 (8,433)	0 (0)	11,444 (8,433)	0	0.0 (0.0)
		2018	0	11,444 (8,433)	11,444 (8,433)	0 (0)	11,444 (8,433)	0	0.0 (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강원 고성	2016	2,659	0	2,659	32	2,627	0	1.2
		2017	355 (-)	2,627 (2,627)	2,982 (2,627)	514 (514)	2,468 (2,113)	0	17.2 (19.6)
		2018	283 (-)	2,468 (2,113)	2,751 (2,113)	372 (368)	2,380 (1,745)	0	13.5 (17.4)
	충북 제천	2016	500	0	500	92	408	0	18.4
		2017	2,505 (-)	408 (408)	2,913 (408)	0.3 (0.3)	2,912 (408)	0	0.0
		2018	751 (-)	2,912 (408)	3,663 (408)	53 (44)	3,610 (364)	0	1.4 (10.8)
	경남 거제	2016	4,798	0	4,798	4,206	592	0	87.7
		2017	0	592	592	0	592	0	0
		2018	0	592	592	0	592	0	0

주: (-)의 숫자는 2016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또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중 총 6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 지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보상 관련 지역주민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28억 8,900만원의 재재이월이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재재이월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경기 안성 (신가)	2016	332	720	1,052	0	1,052	0	0.0
		2017	100 (-)	1,052 (1,052)	1,152 (1,052)	21 (21)	1,131 (1,031)	0	1.8 (2.0)
		2018	160 (-)	1,131 (1,031)	1,291 (1,031)	942 (942)	349 (89)	0	73.0 (91.4)
	경기 안성 (평장)	2016	650	118	768	0	768	0	0.0
		2017	293 (-)	768 (768)	1,061 (768)	58 (58)	1,003 (710)	0	5.5 (7.6)
		2018	137 (-)	1,003 (710)	1,140 (710)	0 (0)	1,140 (710)	0	0.0 (0.0)
	경기	2016	599	118	717	0	717	0	0.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보조 기관	년도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피보조사업자)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안성 (미산)	2017	269 (-)	717 (717)	986 (717)	58 (58)	928 (659)	0	5.9 (8.1)
		2018	126 (-)	928 (659)	1,054 (659)	0 (0)	1,054 (659)	0	0.0 (0.0)
	경기 양평	2016	300	0	300	60	240	0	20.0
		2017	661 (-)	240 (240)	901 (240)	0 (0)	901 (240)	0	0.0 (0.0)
		2018	- (-)	901 (240)	901 (240)	129 (129)	772 (111)	0	14.3 (53.8)
	충남 부여	2016	300	0	300	22	278	0	7.3
		2017	608 (-)	278 (278)	886 (278)	22 (22)	864 (256)	0	2.5 (7.9)
		2018	406 (-)	864 (256)	1,270 (256)	0 (0)	1,270 (256)	0	0.0 (0.0)
	충남 아산	2016	300	0	300	92	208	0	30.7
		2017	-	208	208	0	208	0	0.0
		2018	1,258 (-)	208 (208)	1,466 (208)	0 (0)	1,466 (208)	0	0.0 (0.0)
	강원 원주	2016	974	672	1,646	17	1,630	0	1.0
		2017	237 (-)	1,630 (1,630)	1,867 (1,630)	609 (609)	1,258 (1,021)	0	32.6 (37.4)
		2018	94 (-)	1,258 (1,021)	1,352 (1,021)	351 (351)	1,001 (670)	0	26.0 (34.4)
	강원 인제	2016	300	0	300	75	225	0	25.0
		2017	1,598 (-)	225 (225)	1,823 (225)	38 (38)	1,785 (187)	0	2.1 (16.9)
		2018	-	1,785 (187)	1,785 (187)	0.6 (0.6)	1,784 (186)	0	0.0 (0.3)

주: (-)의 숫자는 2016년 이월된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¹⁰⁾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보조금의 재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이나 기타 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재재이월 문제는 2016년 결산 심사 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재재이월 발생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재이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국고보조금의 재재이월은, 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② 미집행된 보조금의 국고 반납 등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③ 지자체 등 실제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관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의 재재이월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등),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재재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1) 다만, 공공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환경부가 운영 중인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평균 3~5년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재이월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 실적 저조

가. 현황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¹²⁾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와 노후폐수관로 조사, 실시설계 기술검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에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액 766억 1,4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이용된 35억 4,2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730억 7,200만원 중 65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6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77,994	77,994	0	△3,542	74,452	66,830	89.8	0	7,62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76,614	76,614	0	△3,542	73,072	65,450	89.6	0	7,621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농공단지 분양가에 포함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8년도에는 42개소 계속사업에 대한 공사비와 신규사업 17개소의 설계비 및 착공비가 지원되었다.¹³⁾

1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232-302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실적행률을 살펴보면, 2015년 60.8%, 2016년 71.6%, 2017년 69.6%로 실적행률이 부진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78.4%로 전년도에 비해 실적행률이 일부 개선되어 왔다.

[최근 4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실적행내역						
	본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적행률 (B/A)
2015	219,294	166,712	166,712	83,129	249,841	151,827	86,743	11,271	60.8
2016	155,442	149,953	149,953	86,743	236,696	169,483	61,476	5,737	71.6
2017	133,600	106,785	106,785	61,476	168,261	117,107	37,722	13,432	69.6
2018	77,994	65,450	65,450	37,722	103,172	80,845	20,931	1,397	78.4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예산편성 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조정하거나,¹⁴⁾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월 1회에 걸쳐 예산 집행실적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주기적인 집행점검회의를 거쳐 실적행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지연,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분양·입주율 저

- 13) 계속사업 중 '18년 완공사업(13개소)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100%, '19년 완공예정사업(24개소)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의 40% 지원, '20년 이후 완공사업(5개소)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의 30%를 지원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및 착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14)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 사업의 예산액을 2,584억 6,900만원에서 561억 5,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조정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58,469	219,294	155,442	133,600	77,994	56,159

주: 각 연도별 예산액 기준이며, 추경이 편성된 연도는 추경예산 포함액

자료: 환경부

조 등으로 인한 산단 조성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집행 현황(실집행률 40% 이하)]

(단위: 백만원, %)

사업 시행주체	사업 성격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당진 합덕 (고도)	계속	346	0	0	432	432	0	432	0	0.0	실시설계 지연
청양 정산 (증설)	계속	1,600	600	600	248	848	188	660	0	22.2	실시설계 지연
진천 에스폼 (연계)	신규	500	416	416	0	416	0	416	0	0.0	민원으로 부지변경
초평 은암 (1단계)	신규	200	200	200	0	200	0	200	0	0.0	실시설계 지연
함평 학교 농공(연계)	계속	1,900	1,900	1,900	120	2,020	374	1,646	0	18.5	사업계획 변경
포항 융합기술 (연계)	신규	500	480	480	0	500	12	468	0	2.5	산단조성 지연
철원 플라즈마	신규	500	500	500	0	500	141	359	0	28.2	실시설계 지연
남원 일반	신규	500	500	500	0	500	0	500	0	0.0	사업계획 변경
나주 미래	자체 이월	-	-	-	267	267	90	0	177	33.7	준공완료 (집행잔액)
해남 화원	자체 이월	-	-	-	1,120	1,120	0	1,120	0	0.0	산단조성 지연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실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저조한 수납률 문제

가. 현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원인 법정부담금¹⁾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비롯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총량초과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된다.²⁾

환경부는 2018년 법정부담금 세입예산액 7,924억 4,100만원의 198.7%인 1조 5,257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248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7,534억 5,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74억 7,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법정부담금 합계	792,441	792,441	792,441	1,525,751	724,827	753,452	47,472	47.5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59-593

2) ① 대표적인 법정부담금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② 수질배출부과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제32조)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③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환경개선부담금	517,582	517,582	517,582	1,097,302	423,633	626,207	47,462	38.6
대기배출부과금	11,113	11,113	11,113	9,715	7,181	2,534	0	73.9
수질배출부과금	8,784	8,784	8,784	72,505	8,804	63,691	10	12.1
재활용부과금	13,991	13,991	13,991	31,922	22,616	9,306	0	70.8
폐기물부담금	166,188	166,188	166,188	186,693	182,734	3,959	0	97.9
수질개선부담금	15,097	15,097	15,097	21,685	15,035	6,650	0	69.3
생태계보전협력금	54,882	54,882	54,882	91,591	59,090	32,502	0	64.5
기타부담금	4,804	4,804	4,804	14,338	5,734	8,603	0	40.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 및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47.5%이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2014년 49.9%에서 2018년 47.5%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2016회계연도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4	967,300	967,300	967,300	1,844,892	919,726	95.1	49.9	892,317	32,948
2015	867,000	867,000	867,000	1,886,717	942,357	108.7	49.9	904,749	39,611
2016	803,748	803,748	803,748	1,717,864	809,546	100.7	47.1	853,670	54,647
2017	816,910	816,910	816,910	1,622,878	773,690	94.7	47.6	806,296	42,892
2018	792,441	792,441	792,441	1,525,751	724,827	91.5	47.5	753,452	47,47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조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요구 등에 대응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19.10.17. 시행)하여 납부의무승계·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체납액 납부 확인 후에 자동차 이전·말소가 진행되도록 규정하는 등 체납액 관리 강화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시스템 개선 및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하였으며, 징수기관별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법정부담금의 유형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8.6%, 수질배출부과금은 12.1%, 수질개선부담금은 69.3%, 생태계보전협력금은 64.5%로 수납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부과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제외한 법정부담금의 전년대비 수납률이 감소한 실정이다. 즉,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및 2018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전년대비 수납률 증감 (c-C)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환경개선부담금	1,181,247	464,247	39.3	1,097,302	423,633	38.6	△0.7
대기배출부과금	10,777	8,300	77.0	9,715	7,181	73.9	△3.1
수질배출부과금	66,220	8,305	12.5	72,505	8,804	12.1	△0.4
재활용부과금	35,415	17,588	49.7	31,922	22,616	70.8	21.1
폐기물부담금	195,195	191,374	98.0	186,693	182,734	97.9	△0.1
수질개선부담금	21,554	15,257	70.8	21,685	15,035	69.3	△1.5
생태계보전협력금	96,646	61,412	63.5	91,591	59,090	64.5	1.0
기타부담금	15,825	7,206	45.5	14,338	5,734	40.0	△5.5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 법정부담금 중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 '18년 12월말 기준 1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총 18개이며, 전체 수질배출부과금 미수납액의 83.9%인 534억 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체납에 따른 미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³⁾

[2018년 수질배출부과금 장기체납 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8개 업체 수질배출부과금(A)	전체 수질배출부과금(B)	비중 (A/B)
징수결정액	53,428	72,505	73.7
미수납액	53,428	63,691	83.9

주: 1. '18년 12월 31일 기준

2. 18개 업체는 1억원 이상의 수질배출부과금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대상 업체 기준

자료: 환경부

이처럼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되면 세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미수납금의 장기화에 따른 불납결손은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납부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2018년 예산 기준 3조 4,063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체납업체 징수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징수 독려 등 법정부담금 징수를 위한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등 법정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부는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수질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업체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하며, 특히 고액체납업체(3개소)가 전체 미수납액의 약 72%(46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폐업·도산, 납부능력 상실 및 기피 등으로 인해 장기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행률 하락

가. 현 황

환경부의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¹⁾은 「산업입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고보조비율은 100%이다.

동 사업은 본래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체된 2018년도 예산현액 166억 4,800만원 중 166억 4,8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58,090)	- (58,090)	- (-)	16,648 (-)	16,648 (58,090)	16,648 (58,090)	100.0	- (-)	- (-)

주: 괄호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집행된 예산까지 모두 포함한 예산액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적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지역거점 조성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실적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비용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 입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6039-301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실적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5년 1,414억원 규모였던 예산을 2018년 581억원으로 크게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실적행률은 77.7%, 68.7%, 57.3%, 44.7%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동 사업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76억 2,100만원 중 43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26억 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3억 6,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5~2018년 지역거점조성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및 민간대행자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5	141,367	141,367	141,367	11,805	153,172	118,943	77.7	31,047	3,182
2016	90,740	90,740	90,740	31,047	121,787	83,709	68.7	37,055	1,022
2017	92,594	92,594	92,594	37,055	129,649	74,324	57.3	53,160	2,165
2018	58,090	58,090	58,090	39,531	97,621	43,610	44.7	52,643	1,368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8년 9개 시도의 4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도 건설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실적행률이 각각 85.2%, 77.5%인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7개 지자체의 실적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실적행이 부진한 7개 지자체의 경우,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903억 3,800만원 중에서 377억 4,1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으며 실적행률은 13.4%에서 66.0%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8회계연도 지역거점조성사업 지자체별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부산광역시	3,475	3,475	3,475	3,475	896	4,371	3,388	983	0	77.5
경기도	5,617	5,617	5,617	5,617	0	5,617	2,565	3,052	0	45.7
강원도	863	863	863	863	228	1,091	715	376	0	65.5
충청북도	21,065	21,065	21,065	21,065	10,804	31,869	16,287	15,582	0	51.1
충청남도	10,921	10,921	10,921	10,921	10,454	21,375	2,857	18,443	75	13.4
전라북도	2,800	2,800	2,800	2,800	112	2,912	2,481	398	33	85.2
전라남도	1,612	1,612	1,612	1,612	4,094	5,706	3,765	1,720	221	66.0
경상북도	4,801	4,801	4,801	4,801	3,054	7,855	1,871	5,984	0	23.8
경상남도	6,936	6,936	6,936	6,936	9,889	16,825	9,681	6,105	1,039	57.5
합계	58,090	58,090	58,090	58,090	39,531	97,621	43,610	52,643	1,368	44.7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단 분양 저조, 대출조건 강화에 따른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 지연,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지연·변경·취소,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지연, 민원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실적현황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실적현황 부진 사유]

사도	산업단지명	실집행률 (%)	집행부진사유
충북	진천에스폼	51.1	진입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중지
충남	천안 동부바이오	13.4	사업시행자 자금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자 지정 취소(18.3) 및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중
	남공주		사업시행자 변경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아산디지털		- 주변지역 수질문제로 인한 계획 변경 - 행정절차 이행 및 진입도로 공사 지연(보상)에 따른 사업 지연
	송산2		공사 준공 예정이나 용수 배분 관련 협의 지연
	예산신소재		장기간 행정소송 및 경기악화로 인한 분양업체 이탈로 산단 추진계획 변경, 공사 중지, 총사업비 변경 추진

사·도	산업단지명	실집행률 (%)	집행부진사유
전남	도양	66.0	산업단지 공사 미착수에 따라 공사 지연
	담양		공사로 인한 지하수고갈 등 집단민원으로 공사 지연
경북	제내	23.8	금융원 PF자금대출 조건 강화에 따른 사업자금 확보 지연
	고경		PF대출 지연에 따른 본단지 사업 착수 지연
	경산4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착공 지연
	동고령		산업단지 부지 조성 지연 및 수자원공사 수도이설 협의 지연
	월성		편입 토지 수용재결 신청(18.5)으로 부지 조성 지연
경남	법송	57.5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저조로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단지 내 송수관로 부설 지연
	김해 테크노밸리		배수지 설치 반대 민원 및 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석계2		산업단지 내 연계시공구간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선형공정 미시행 및 공사 지연

자료: 환경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산단 분양 저조와 대출 조건 강화 등의 문제는 환경부에서 통제·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지연, 설계용역 발주 지연, 지역주민의 민원 등은 다른 유사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연쇄적인 실집행 부진 사유이므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지역거점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현황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²⁾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³⁾에 의거하여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동급 내연기관 차량가격과의 차액의 50%인 2,250만원을 정액 보조하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지자체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비용(개소당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확대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물량(총 659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148억 3,500만원과 수소충전소 10개소에 대한 설치비 지원 150억원 등 총 298억 3,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8,585	29,835	0	0	29,835	29,835	100.0	0	0
수소차	3,585	14,835	0	0	14,835	14,835	100.0	0	0
수소충전소	15,000	15,000	0	0	15,000	15,000	100.0	0	0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6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2013년 추진된 이래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비해 높은 친환경성, 짧은 완충시간과 긴 주행거리 등의 요인들로 인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8회계연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3월 27일부터 신형 모델의 출고가 시작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된 659대의 계획물량을 초과하여 총 712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당해 연도에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6월 현재 계획물량 4,000대 중 1,378대가 보급되어 계획된 물량이 연내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

(단위: 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실적	71	41	71	73	130	51	659	712	4,000	1,378

주: 2019년 보급실적은 6월 21일 기준

자료: 환경부

특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송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후부터 '19년 5월말 현재까지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었으며, 계획하였던 수소충전소 구축 물량의 대부분은 부지선정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6년과 2017년에 계획되었던 6개 충전소는 모두 이월되어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가 되어서야 구축·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회계연도에 계

획하였던 충전소 16개소 또한 전부 이월되었으며, 2019년 6월말 현재 계획물량 중 3개소만이 설치되었다.

[2016~2019년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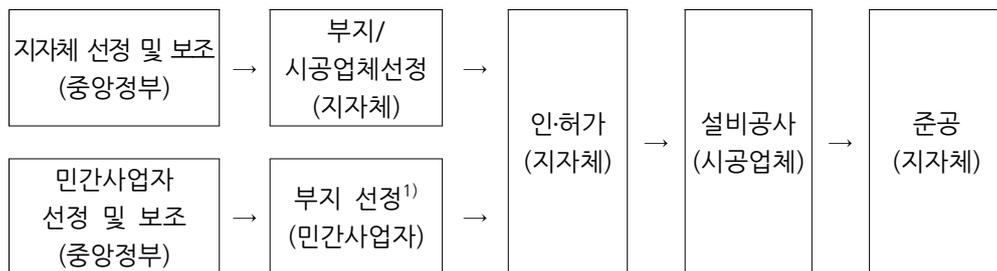
구분	예산	목표	실적		설치·운영시점
			설치중	완료	
2016	6,000	4	-	4	'17.3월, '17.9월, '18.3월, '18.9월
2017	15,000	2	-	2	'18.11월, '19.1월
2018	15,000	16	13	3	'19.4월, '19.5월(2개소)
2019.6	45,000	30	30	-	-

주: 지자체보조사업 32개소는 '19년 6월 20일 현재 부지선정 등은 완료된 상태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준공예정이며, 11개소는 공모 평가가 완료된 상태임
자료: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부지선정 후 실시설계 2~3개월, 입찰공고 4개월, 건축 인허가 2개월, 설치공사 3개월, 가스안전검사 1개월 등 충전소 건설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절차]



주: 1) 민간사업자가 시공업체가 아닌 경우, 부지선정과 아울러 시공업체 선정 필요
자료: 환경부

한편, 2019년 6월말 현재 환경부에서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울산 4개소, 광주 2개소, 경남 2개소, 충남 1개소 등 수소연료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에도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연도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현황]

(단위: 개소, 대)

구분	수소충전소 구축 ¹⁾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 ³⁾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민간 ²⁾	계	
합계	11	13	24	2,235
서울	-	2	2	126
부산	1	-	1	171
대구	-	-	-	3
인천	-	1	1	20
광주	2	-	2	348
대전	1	-	1	54
울산	4	2	6	868
세종	-	-	-	0
경기	-	6	6	126
충남	1	-	1	125
전북	-	-	-	1
경북	-	1	1	1
경남	2	1	3	183

주: 1) 수소충전소 구축은 '19년 6월 20일 현재 설치·운영 중인 충전소 수

2)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서울시 등 공공·민간부문에서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수

3)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실적은 사업시행 후 '19년 6월 21일까지의 누계 기준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부지확정 및 공모절차, 각종 인허가 등의 사업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수소충전소의 미구축 또는 설치 지연은 수소연료전지차의 구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주요 거점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 사업¹⁾은 「하수도법」 제4조의3²⁾에 따라 지정된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의 우수관로, 합류식 관로 등의 정비, 하수저류시설 및 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³⁾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1,458억 3,4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2018년 도시침수대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도시침수대응	144,634	145,834	0	0	145,834	145,834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중 일부만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47-348

2)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신설 사업은 30~70%, 교체·보수의 경우 20~50%의 보조율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76개소이며, 2016년 6월 지정된 지역 10개소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대응 사업을 비롯한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응하여 예산편성 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63.7%로 부진하였던 실집행률은 2017년 72.7%, 2018년 74.1%로 실집행률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 사업은 2015년 2,424억 1,600만원에서 2018년 1,458억 3,400만원으로 예산액을 지속적으로 감액하는 등 사업 규모가 축소⁴⁾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일부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예산 감액(감소율 39.8%) 대비 실집행률 제고 효과(증가율 16.3%)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 도시침수대응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본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202,543	202,543	202,543	202,543	66,184	268,727	171,066	96,479	1,182	63.7
2017	178,700	178,700	178,700	178,700	96,479	275,179	198,738	67,190	9,252	72.7
2018	144,634	145,834	145,834	145,834	67,190	213,024	157,810	43,879	11,334	74.1

자료: 환경부

특히,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절차 지연 등의 사유와 더불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175,722	242,416	202,543	178,700	145,834

주: 예산액 기준이며, 추경예산이 편성된 연도에는 추경예산 포함액

자료: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2018년도 완공사업은 잔여사업비의 100%, 2019년도 완공사업은 40%, 2020년도 완공사업은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은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은 계속사업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은 잔여사업비의 15%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의 신규사업 추진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에 대하여 3~5억원 가량의 설계비만 편성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등 타 하수도 관련 사업과는 달리, 계속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2018년도 도시침수대응 사업 실집행 부진 지자체(예시)]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 구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편성내역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고령군	계속	1,250	4,576	5,826	3,315	2,511	0	56.9		
고성군	신규	1,200	0	1,200	0	1,200	0	0.0	시설비	507
									실시 설계비	693
나주시	신규	3,092	0	3,092	19	3,073	0	0.6	시설비	2,805
									감리비	280
									시설 부대비	7
논산시	계속	556	0	556	17	539	0	3.1		
무안군 (남창)	신규	756	0	756	268	487	0	35.5	시설비	720
									감리비	35
									시설 부대비	1
부산 광역시	계속	3,513	934	4,447	2,194	651	1,602	49.3		

5)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 지방비로 실시설계를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계속사업처럼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 구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편성내역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시설비	감리비
사천시	신규	2,160	0	2,160	465	1,695	0	21.5	시설비	1,330
									감리비	825
									시설 부대비	6
상주시	신규	2,486	0	2,486	906	1,580	0	36.4	시설비	1,742
									감리비	744
성주군	계속	1,726	98	1,824	1,034	0	790	56.7		
순천시 (남제)	계속	3,636	0	3,636	1,465	2,171	0	40.3		
안산시	계속	5,435	5,443	10,878	3,636	7,242	0	33.4		
완도군	계속	3,207	3,519	6,726	235	6,486	5	3.5		
진도군	계속	0	9,496	9,496	3,230	0	6,267	34.0		

주: 1) 지자체 교부액의 세부비목별 예산현액임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편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설계 완료 이후에 재원협외, 총사업비 변경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설계 용역이 지연되거나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 실집행 부진 지자체 집행부진 사유(예시)]

구분	계속/신규	기본설계 완료일	실시설계 완료일	실집행률 (%)	집행부진(60%이하) 사유
고령군	계속	2016.11.25.	2016.11.25	56.9	이월예산 과다로 '18년 집행저조
고성군	신규	설계중	설계중	0.0	설계용역 심사 1순위 업체 법정관리로 계약지연
나주시	계속	2017.3.27.	2019.3.	0.6	관로 매설위치 관련 주민협외 지연으로 인한 실시설계 지연

구분	계속/ 신규	기본설계 완료일	실시설계 완료일	실집행률 (%)	집행부진(60%이하) 사유
논산시	계속	2015.6.30.	2015.6.30.	3.1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 협의 지연
무안군 (남창)	신규	2018.1.15.	2018.2.28.	35.5	민원 및 지장물 발생에 따른 공정률 지연
부산 광역시	계속	2017.6.16.	2017.6.16.	49.3	관로매설 도로 토지보상 문제협의지연
사천시	신규	2019.1.30.	2019.1.30.	21.5	착공지연
상주시	신규	2018.12.24.	2018.12.24.	36.4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절차 지연 으로 공사 착공(19.3월) 지연
성주군	계속	2015.2.28.	2015.2.28.	56.7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
순천시 (남제)	계속	2018.6.	2018.6.	40.3	특허공법 심의지연으로 설계용역 지연
안산시	계속	2016.1.4.	2016.1.4.	33.4	민원 및 지장물 다수발생에 따른 공정부진
완도군	계속	2019.3.20.	2019.3.20.	3.5	항만시설 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지연 및 공법선정심의 지연으 로 실시설계용역 지연
진도군	계속	2016.5.25.	2016.10.14.	34.0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 필요에 따른 집행지연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설계 완료 이후에도 재원협이나 총사업비 변경, 토지보상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가 미완료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하수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중 일부만 편성하는 등 집행률 제고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온실, 퇴·액비 생산시설, 조경시설 등 친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²⁾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면 지자체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8년 계속사업 6개소, 신규사업 5개소에 대한 예산현액 70억 2,000만원 중 5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0억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폐기물처리시설확충	129,027	127,009	143	0	2,300	129,452	126,947	98.1	0	2,505
친환경에너지타운	7,020	7,020	0	0	0	7,020	5,020	71.5	0	2,00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여 과도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등 사업 추진절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8-318

2)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중 '18년 완공사업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 100%, '19년 완공예정사업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의 40%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개소당 타당성조사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 12월 수립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에 따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등 대표적인 환경혐오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고, 기피·혐오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³⁾

그러나 최근 3년간(2016~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실집행률은 66.0%, 2017년 59.4%, 2018년은 73.3%로 사업수행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6	6,650	6,650	6,650	60	6,710	4,428	2,242	40	66.0
2017	9,564	9,564	9,564	2,302	11,866	7,052	4,814	-	59.4
2018	7,020	5,020	5,020	4,814	9,834	7,211	2,521	102	73.3

자료: 환경부

이러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현재 사업 추진절차상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예비후보지를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⁴⁾를 수행하게 된다.

3) 2019년 5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 추진된 청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9년 1월부터 시험가동 중이다.

4) 사업 대상 마을 기초자료 조사, 주민의견수렴, 주민수익사업 아이템 발굴, 경제성 분석(B/C), 인·허가 사항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예비 선정' 후, 사업 시기, 에너지 활용성, 관련 법 적합성, B/C분석 등 경제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추진절차]

공모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사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 → 예비후보자 선정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최종 사업지 선정 → 설계 → 공사 → 운영

자료: 환경부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연례적으로 하반기 이후에야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가 연말 또는 차년도에 발표되어 사업 추진 또는 취소 여부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현황]

연도	지역	용역기간
2015	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	2015.7.24.~2016.2.15.(약7개월)
2016	인제·음성·제주1	2016.7.6.~2016.11.11.(약4개월)
2017	통영·군위·제주2	2017.7.3.~2017.12.15.(약5개월)
2018	김해·군산·장성·성주·괴산	2018.9.4.~2019.3.2.(약6개월)

주: 현재 사업 운영 및 추진 중인 지역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평균 소요기간 기준

자료: 환경부

예를 들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천안시와 화성시의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가 2017년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사업부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취소되면서 2018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취소 현황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시행 주체	사업 취소 사유	사업취소 후 불용액
시작	취소			
2014	2015	통영시 ¹⁾	지역주민의 사업철회 요청	850
2016	2017	보령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결여	1,000
		완주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결여	1,000
2017	2018	천안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입지반대로 인한 사업부지 미확보	1,000
		화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1,000

주: 1) 통영시의 경우, 2014년도 교부액 1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2015년 9월 사업취소 결정으로 2015년도 예산액 8억 5,000만원이 불용됨

자료: 환경부

2018년 신규사업 5개소(김해, 군산, 성주, 괴산, 장성)의 경우에도 '18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가 추진되어 '19년 5월 현재까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나, 2차년도 사업비가 '19년 예산에 모두 편성되어 동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불용과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편성 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차년도 보조금 또한 불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환경부는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공모와 심사·평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업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조정하여 사전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¹⁾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치가 어려운 환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자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3,000	13,000	-	-	13,000	13,000	100.0	-	-
한국벤처투자 출자금	13,000	13,000	-	-	13,000	13,000	100.0	-	-

자료: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국고와 민간투자를 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²⁾로, 2년 이상 투자 및 5년 이상 존속 하에 투자·회수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³⁾ 매년 환경부가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주)한국벤처투자에 펀드예산을 출자한 후,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민간 투자금 모집 등을 거쳐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936-324
- 2)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모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 3) 현재 환경부는 2년 이상 투자, 5년 이상 존속 하에서 운용사 및 출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회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투자조합 결성 등 사업 추진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차 펀드는 6월 운용사가 선정되었으나, 운용사 측의 잠재투자처 변경, 민간자본 유치 지연 등으로 인해 12월이 되어서야 펀드가 결성되었고, 실제 투자는 2018년 2월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미래환경산업펀드 투자 현황(2019년 6월말 기준)]

구분	펀드 예산 출자일	운용사 모집공고	출자심의 위원회 심의	운용사 선정	투자조합 결성	투자일
2017년 (1호 펀드)	'17.4.28.	'17.4.27. ~'17.6.7.	'17.6.27.	'17.6.28.	'17.12.13.	'18.2월 ~진행중
2018년 (2호 펀드)	'18.5.29.	'18.2.21 ~'18.9.7.	'18.6.15. '18.10.10.	'18.10.12.	'19.4.30.	'19.5월 ~진행중
2019년 (3호 펀드)	'19.5.30.	'19.1.31~ 진행 중	-	-	-	-

자료: 환경부

특히, 2018년도 정부 예산 130억원이 출자된 2차 펀드의 경우, 2018년 2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미신청 및 투자실적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선정이 3차례 지연되었고, 4차 공고 후 10월 운용사가 선정된 후 '19년 4월말이 되어서야 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미래환경산업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경과]

구분	공고일	경과
1차	2018.2	신청사 없음
2차	2018.5	1개사 지원 → 2차 심의 탈락
3차	2018.7	1개사 지원 → 1차 심의 탈락
4차	2018.8	3개사 지원 → 운용사 최종 선정('18.10월)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2017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펀드 관리기관 선정과 투자조건 합의 지연, 운용사 선정의 지체, 민간자본 유치 및 투자조합 결성까지의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1차 펀드와 2차 펀드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18년 4월 첫 투자가 이루어진 1차 펀드는 '19년 7월 기준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7억 2,100만원(조성액 대비 61.2%)이 투자되었으며, 2차 펀드는 '19년 4월말 투자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투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

구 분	예산액	선정 펀드 수	조성액 (A)	최종 결성일	투자기간	투자 기업 수	투자액 (B)	투자실적 (B/A)
1차 펀드	20,000	1	42,000	2017.12.13.	3년	8	25,721	61.2%
2차 펀드	13,000	1	22,000	2019.4.30.	4년	-	-	-

주: 2019년 7월 기준

자료: 환경부

2차 펀드의 투자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점을 감안할 때, 2019년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3차 펀드 또한 운용사 선정과 투자 조합 등의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투자실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성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출자금이 유망한 환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감독 강화 필요

가. 현황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¹⁾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굴뚝원격감시관제센터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87억 2,300만원 중 8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8,723	8,723	0	0	8,723	8,450	96.9	272	1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6,722	6,722	0	0	6,722	6,722	100.0	0	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070	1,070	0	0	1,070	1,070	100.0	0	0
IoT활동 소규모 사업장 관리기반 마련	900	900	0	0	900	628	69.8	272	0
일반경비	29	29	0	0	29	27	93.1	0	1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응하여 배출 허용 할당량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1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토대로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연도별·지역별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총량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총량관리제의 배출량 측정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²⁾ 중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³⁾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와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민간대행사업(한국환경공단)으로 지역별 관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 및 한국환경공단의 실행률은 각각 87.4%와 96.1%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할당량이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아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감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총량관리제도는 5년 단위로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할당기간별 총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을 살펴보면, 1차 할당기간('08~'12) 중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할당량 대비 배출량 비중이 평균 57.7%, 황산화물(SOx)은 평균 53.3%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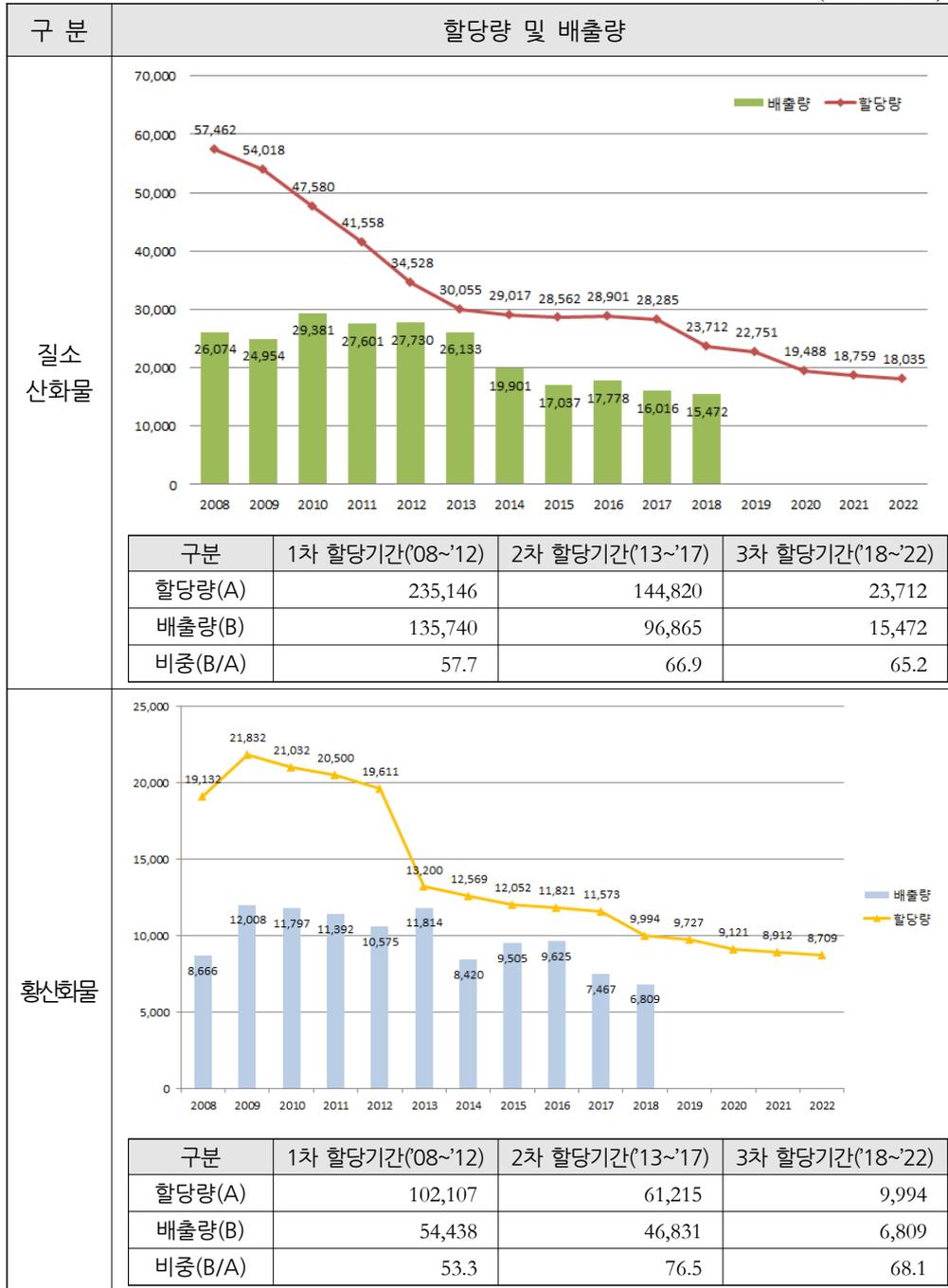
2)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된다. 사업장총량관리제는 2015년까지 1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과 2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3종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사업장폐기물), 1톤(생활폐기물) 이상인 시설 등
- (석유제품 제조시설)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전기로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제품 제조시설 등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할당량 및 배출량 비교]

(단위: 톤, %)



주: 1. 1차 할당기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3차 할당기간('18~'22)의 할당량·배출량 분석은 자료가 확보된 2018년 기준임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할당량과 배출량의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할당계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할당량 수준을 더욱 낮게 설정하였으나, 2차 할당기간(13~17) 중 NOx와 SOx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 비중은 각각 66.9%와 76.5%로 나타나 여전히 할당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차 할당기간(18~22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고 가동율을 통한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평균 가동율 기준을 적용하였으나,4) NOx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 비중은 65.2%, SOx는 68.1%로 확인된 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관리 기체로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특히,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총량초과과징금 제도5)는 배출량 대비 할당량이 과도하게 설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건(총 부과금 4억 9,678만원)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실적이 전무하여 환경규제의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2018
부과대상	11	-	-	3	1	5	2	-
부과금액	496,781	-	-	3,042	4,009	27,182	462,548	-
가산금	6,149	-	-	-	-	-	6,149	-

자료: 환경부

이와 더불어,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이 제정되고 '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6)

4) [기간별 할당량 산정 방법]

구 분	1차 할당(08~12년)	2차 할당(13~17년)	3차 할당(18~22년)
가동율 산정	7년간 최고 가동율	6년간 최고 가동율	5년간 평균 가동율
할당계수 산정	동일업종 그룹평	개별 배출구별 (철강 등은 별도할당계수 적용)	

자료: 환경부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배출허용 할당량 수준을 현실화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년 4월 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대기 관리권역 지정 및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사업장 선정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배출량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의하면서, 대기관리권역지정제도의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 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배출허용 총량관리 사업장은 동법 제17조제5항에 의거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8-1.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의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연구용역비 과다이월 주의 필요

가. 현 황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¹⁾은 취약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 및 영유아·어린이 등 면역체계가 취약한 민감계층의 환경성질환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8년 예산현액 90억 7,600만원 중 65억원을 집행하였고, 23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7,349	7,349	1,727	0	9,076	6,500	71.6	2,324	252
환경성질환 기초 조사 및 예방관리	1,089	1,089	0	0	1,089	1,070	98.3	0	19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654	1,654	455	0	2,109	1,094	51.9	1,005	10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4,606	4,606	1,272	0	5,878	4,336	73.8	1,319	223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938-302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연구용역 발주가 연도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개발비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환경성질환에 관한 기초조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임산부·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유해환경노출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260목)를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의 최근 3년간(2016~2018) 연구개발비(260목)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연구개발비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24.7%, 2017년은 28.1%이었으나, 2018년에는 총 10건의 연구과제 중 9건이 이월되었고 이월액 비중 역시 40.3%로 증가하였다.

[2016~2018년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예산액(A)	계약액	계약건수	이월액(B)	이월건수	이월률(B/A)
2016	3,136	3,136	8	776	4	24.7
2017	4,402	4,327	6	1,236	2	28.1
2018	5,477	5,420	10	2,207	9	40.3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2018년에 추진된 연구용역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1건의 연구과제만이 연도 내에 수행되었고, 나머지 9건의 연구과제는 2019년에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동 사업에서 연구과제의 이월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다수의 연구용역과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용역의 계약기간과 예산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2018년에 계획하였던 총 10건의 연구과제 중 절반인 5건의 과제가 12월이 되어서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사전에 연구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이월된 연구과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 사업 현황	계약 기간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수행기관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	'18.12~'19.5	250	247	179	68	울산대학교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	'18.5~'19.1	200	195	136	59	동아대학교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18.5~'19.3	200	181	127	5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오염 건강피해지역 (아스콘 공장 등) 주민건강영향조사	'18.12~'19.8	300	297	0	297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월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2차)	'18.12~'19.8	137	137	0	137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18.12~'19.12	172	172	0	172	한림대학교
어린이 환경보건 대규모 출생코호트 연구(IV)	'18.3~'19.2	2,730	2,726	1,908	818	울산대학교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지원센터 지정(IV)	'18.3~'19.2	1,337	1,333	933	400	이화여자대학교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생체시료 이송 및 관리체계 구축	'18.12~'19.5	50	45	0	45	(재)서울의과학 연구소

자료: 환경부

‘사월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등 주민의 청원이 제기된 이후부터 연구계획 수립, 연구계획 심의 및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연도말 착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총 10개 중 9개의 연구과제가 이월된 것은 전반적인 사업 및 연구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발주가 연도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구과제 선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연구과제 이월을 방지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8-2.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부진 및 연례적 이월 해결 필요

가.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²⁾은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수질 오염총량관리 시행대상 지역의 수질현황 및 수질변동과 연계한 총량제 이행사항을 평가하며, 4대강 보 구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등을 관찰하여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8년 예산현액 494억 900만원 중 418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6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45,781	3,728	△100	49,409	41,822	84.6	6,617	970
일반연구비 (260목)	14,329	14,329	2,379	△571	16,137	11,120	68.9	4,881	136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용역비의 집행부진과 연례적 이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차년도 이월액 66억 1,700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은 일반연구비(260목)로, 전체 이월액의 약 73.8%인 48억 8,100만원이 일반연구비(260목)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4년간(2015~2018)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살펴보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234-304

면, 2015년 집행률이 91.8%이었으나 2018년 68.9%로 하락하였으며, 이월액 규모는 2015년 4억 1,100만원에서 2018년 48억 8,100만원까지 급증하였다.

[2015~2018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5	6,966	184	△250	6,900	6,331	411	157	91.8
2016	7,394	411	0	7,805	6,227	819	759	79.8
2017	7,432	819	0	8,251	5,598	2,379	274	67.8
2018	14,329	2,379	△571	16,137	11,120	4,881	136	68.9

자료: 환경부

2018년의 경우, ‘4대강 자연성 회복’ 내역사업이 신설되는 등 2017년 예산에 비해 일반연구비가 크게 증액(68억 9,700만원)되었으며, 4대강 조사·평가단이 '18년 8월에 구성·운영됨에 따라 연구용역과제가 하반기 이후 발주되어 연구비 이월이 증가하였다.

또한,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 ‘안동댐 상류 수생태계 현황조사’ 등 일부과제의 경우, 안동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후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과제 발주가 지연되었다.

특히, 동 사업의 연구용역과제 이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2016년 9건(이월액 8억 1,900만원), 2017년 14건(23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22건(48억 8,1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2018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연구용역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예산액(A)	계약액	계약건수	이월액(B)	이월건수	이월률(B/A)
2016	7,394	6,773	14	819	9	11.1
2017	7,432	7,169	19	2,379	14	33.2
2018	14,329	13,683	34	4,881	22	35.7

자료: 환경부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과제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과도한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경우, '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이래, 보 개방으로 인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계 변화 측정, 보 안전성 평가 등 보 개방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18년에 계획하였던 다수의 연구과제가 2019년으로 이월되면서 전년도에 이월된 연구용역과제를 완료한 후에 새로운 과제를 이행하게 되는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조기에 발주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연구과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과제 계약기간과 예산 회계연도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일반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의 연례적인 과다이월·불용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

가. 현황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¹⁾은 201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²⁾에 따라 중국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의 시설에 집진·탈질·탈황 등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00억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0	0	10,000	10,000	100.0	0	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과도한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정부간 협력 강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사업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국내 참여 후보기업(기술)을 우선 선정한 후, 현지 홍보 및 협상결과에 따라 한·중 기업간 계약이 체결될 경우, 평가를 통해 실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하고 총 계약금의 20%(최대 40억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6

2)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분야에서 대기오염수치 정보 공유와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실시하고, 한·중 환경산업포럼 및 철강 등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실증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며, 동북아지역차원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원)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³⁾

동 사업의 위탁대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시작년도인 2015년도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관리비 지출내역⁴⁾ 외에 96억 6,600만원을 모두 이월하였고, 201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우선적으로 집행⁵⁾하는 과정에서 2016회계연도 예산액 96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7회계연도에는 201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96억 2,100만원 중 지원금 잔액인 76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 중 83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2017회계연도에서 이월된 83억 3,400만원 중 56억 7,200만원을 불용하고 2018회계연도 예산 중 83억 7,4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10,000	10,000	0	0	10,000	334	3.3	9,666	0
2016	10,000	10,000	9,666	0	19,666	10,045	51.1	9,621	0
2017	10,000	10,000	9,621	0	19,621	3,643	18.6	8,334	7,644
2018	10,000	10,000	8,334	0	18,334	4,288	23.4	8,374	5,672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한계와 더불어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국내 참여 후보기업을 선정 후 중국 현지 홍보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참여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중국 기업과의

3) 총 계약금의 80%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및 중국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4) 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설명회 개최 등 사업관리 및 지원비(인건비, 운영비 및 여비 등)에 지출되었다.

5) 5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95억원 및 관리비 5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여지가 있으며, 총 사업비와 환경부 부담액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특성상 양국 관계의 변화, 중국 측의 의지 등 대외적 여건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의 경우, '17년 12월 양국 환경장관 간의 '한·중 환경협력계획' 합의·서명, 한국과 산서성의 고위급 환경협력회담 진행, '18년 6월 환경부-장쑤성 환경보호청 간 환경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양국의 환경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동 사업의 계약 체결 실적이 일부 제고되었으나, 하반기 이후에야 비로소 신규계약이 체결되었고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⁶⁾

[참여업체 계약 및 정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	실증사업 국내수행기업	프로젝트 규모	정부지원금 (프로젝트 금액의 20%)	지원 연도	총 사업기간
2016	하북성	A사	2,800	560	2016	'16.8.1~'17.7.31
	산서성	B사	19,000 (465)	1,203 (91)	2016	'16.9.26~'17.7.31
	산서성	C사	10,900	2,173	2016	'16.10.18~'17.4.30
	산서성	D사	13,100	2,578	(1차) 2016 (2,3차) 2017	'16.11.18~'19.5.31
	산서성	E사	19,200	3,840	(1차) 2016 (2차) 2017	'16.12.19~'19.11.30
2017	계약체결 건 없음					
2018	산서성	F사	13,600	2,721	(1차) 2017 (2차) 2018	'18.3.1~'19.12.31
	길림성	G사	400	88	2018	'18.8.17~'18.12.30
	강소성	H사	1,200	245	2018	'18.8.17~'19.4.30
	길림성	I사	450	502	2018	'18.10.11~'19.6.30

6) 환경부는 과도한 이월의 연례적인 발생과 사업 추진실적 저조에 대한 국회의 2016회계연도 및 2017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위탁계약기간('18.3.13~'19.6.30) 내에 한·중 기업 간 신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018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차년도 이월액 83억 7,400만원은 모두 불용처리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19년 예산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	실증사업 국내수행기업	프로젝트 규모	정부지원금 (프로젝트 금액의 20%)	지원 연도	총 사업기간
	산서성		960			
	산서성		1,090			
	산동성	J사	600	119	2018	'19.1.11~'19.4.30
	강소성	K사	700	144	2018	'19.1.11~'19.6.30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연례적인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체결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장애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주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 사업추진방식 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¹⁾은 환경기술 개발 R&D, 환경인증제도,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녹색제품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²⁾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8년 예산현액 485억 2,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8,529	48,529	0	0	48,529	48,529	100.0	0	0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년도 수입예산액 4,919억 2,200만원 대비 100.7%인 4,955억 2,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 114억 2,200만원 대비 117.3%인 133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예산	비 고
	수입예산 (A)	수입결산 (B)	차액 (B-A)	수납률 (B/A)		
총 계	491,922	495,527	3,605	100.7	543,170	
정부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출연)	48,529	48,529	0	100	42,965	환특회계 수지차출연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950-302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환경부는 수지차 보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예산	비 고
	수입예산 (A)	수입결산 (B)	차액 (B-A)	수납률 (B/A)		
수수료 수입(계)	11,422	13,394	1,972	117.3	22,239	자체 수수료 세입
출연위탁수수료 (인증, 시험분석등)	3,670	3,687	17	100.5	12,489	
환경표지 인증심사	7,240	9,141	1,901	126.3	9,250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심사	500	566	66	113.2	500	
제품환경성 표시·광고사전검토	12	-	△12	0	-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 규모를 적절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³⁾ 및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⁴⁾에 의거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⁵⁾이 우수한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에 문자·숫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하도록 인증함으로써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비교]

구분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개요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우수함을 인증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성정보(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등)를 표시
근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181호)
현황 (18.12월 기준)	3,825업체 14,698개 제품 인증	65업체 3,068개 제품 인증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기본수수료(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소요일수), 출장비	기본수수료(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심사일수 (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제경비(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등 환경표지제도 관련 수수료 수입은 기술원의 수수료 수입결산액 중 약 7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수수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표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016년 83억 3,600만원, 2017년 89억 4,300만원, 2018년 91억 4,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목표 대비 달성률 또한 2016년 108.3%에서 2018년 126.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수수료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 약 115.6%의 수입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수수료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인증업체 수	예산(A)	결산(B)	차액 (B-A)	수입달성률 (B/A)	
환경표지 인증심사	2016	3,419	7,700	8,336	636	108.3
	2017	3,643	7,100	8,943	1,843	126.0
	2018	3,825	7,240	9,141	1,901	126.3
환경성적 표지제도 인증심사	2016	78	490	572	82	116.7
	2017	81	500	584	84	116.8
	2018	65	500	566	66	113.2

자료: 환경부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체 수가 '16년 3,497개에서 '18년 3,89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인해 녹색제품 구매액 또한 '14년 2조 2,004억원에서 '17년 3조 3,414억원 규모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표지제도 운영을 통한 환경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의 증가 또한 예측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제도 인증 수수료 등 수입 증가 요인을 검토하여 수수료 수입 규모를 적절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¹⁾은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대집행,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적정처리,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후관리 이행이 완료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28억 1,200만원 중 2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2,812	2,812	0	0	2,812	2,642	94.0	161	9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293	293	0	0	293	125	42.7	161	7
익산 석산복구지 유독성 침출수 처리	1,500	1,500	0	0	1,500	1,500	100.0	0	0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1,019	1,019	0	0	1,019	1,017	99.8	0	2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폐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1

기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70%)와 지자체(30%)가 비용을 분담²⁾하여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후, 방치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기별로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한다.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절차]

① 방치폐기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대상 선정 → ② 지방비 확보 후 국고지원 신청 → ③ 방치폐기물 처리 → ④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권 청구
--

자료: 환경부

특히, 최근 들어 2018년 필리핀에 불법수출된 폐기물의 국내반환 문제를 비롯하여 불법투기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19.2)은 2019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을 ①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방치폐기물의 경우 2022년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총량 중 17.6%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였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

(단위: 만톤)

전체 (~'22)	계	처리 책임자 부담			③ 행정대집행
		소계	① 이행보증 활용 (9%)	② 책임자 직접 처리 (50.1%)	
	83.9 (100%)	49.6 (59.1%)	7.5 (9%)	42.1 (50.1%)	34.3 (40.9%)
'19년	46.2 (55.0%)	40.4	7.5	32.9	5.8

자료: 환경부

2) 2015년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50이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0:30으로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집행된 예산은 2014년 1억 6,000만원(1건)으로 집행률이 36.2%에 그쳤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집행된 일부 예산 외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 지자체의 신청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의 경우 메르스 관련 지정폐기물³⁾ 처리에 집행된 1억 4,2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액은 불용되었고, 2016년에는 동 사업 예산이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전액 전용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액 불용되었다. 2018년에는 인천 서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유출된 폐산 등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1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1억 6,1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2014~2018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	442	0	0	442	160	36.2	63	219
2015	442	63	0	505	142	28.1	0	363
2016	293	0	△293	0	0	-	0	0
2017	293	0	0	293	0	0.0	0	293
2018	293	0	0	293	125	42.7	161 ¹⁾	7
2019	5,854 ²⁾	161	0	6,015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주: 1) 평택시로 반환되는 불법수출폐기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세부사업 예산액 중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9조4)에 따른 행정대집행 주체인 지자체가 방치행위자(폐기물처리업체 등)로부터 구상금을 징수하기 어렵고, 처리명령과 고발 등의 반복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등

3)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방치폐기물 발생 시 처리책임이 국가(환경부)이므로 국비 100%로 처리비용을 부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4)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구상금 청구절차에 부담이 따르며,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4~2018년) 방치폐기물 적체량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걸쳐 방치폐기물 발생이 급증⁵⁾함에 따라 '19년 1월 전 수조사 기준 방치폐기물 적체량이 약 83만 9천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4~2018년간 방치폐기물 발생·처리·적체 현황]

(단위: 톤)

구 분	전년도 잔여량	발생량	처리량 ¹⁾	적체량 (누적)	비 고
2014	89,558	19,864	31,788	77,634	국비지원 160백만원 (460톤처리)
2015	77,634	186,445	184,411	82,668	
2016	82,668	681,241	33,699	730,211	
2017	730,211	55,211	9,150	776,272	
2018	776,272	337,750	274,700	839,322 ²⁾	국비지원 125백만원 (85톤 처리)

주: 1) 방치폐기물 처리량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방치폐기물과 국비지원을 통해 처리된 일부 방치폐기물 처리량의 합계임

2) 2018년 누적 적체량 현황은 '19년 1월 전수조사 기준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대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환경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이행보증 개선,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치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환경부는 2015년과 2016년에 급증한 원인에 대해 자치단체가 환경부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인지 과거의 것이 특정한 해에 신고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 중 국립공원 산불감시원 및 국립공원 환경개선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 사업에 일반예비비 31억 7,600만원, 구조조정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통영, 목포, 영암, 해남, 군산,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정비 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13억 4,500만원 등 총 145억 2,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다.

[2018회계연도 환경부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자금 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일반 예비비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2,710	2,710	10.31 12.5	0	0	2,710	100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466	466	10.31 12.5	0	0	461	98.9
	소계	3,176	3,176		0	0	3,171	99.8
	합계							
목적 예비비	하수관로정비	3,502	3,502	10.8	0	0	3,502	100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010	1,010	9.21	0	0	710	70.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300	2,300	7.30	0	0	2,300	10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4,533	4,533	7.30 9.21	0	0	4,533	100
	소계	11,345	11,345	-	0	0	11,045	97.4
합계	14,521	14,521	-	0	0	14,216	97.9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사용요건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 소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통해 본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등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① 태풍 ‘짜미’와 ‘콩레이’의 영향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해상 공원 등에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② 산불발생 위험의 증가에 따라 순찰·감시·계도·진화 등 긴급한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③ 국립공원 내 셋길·하천 등 환경취약지 정화활동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이나 오물투기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 등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인력 증원을 목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 일반예비비 2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예비비 사업 집행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예비비	2,710백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금)
운영기간	'18.11.1. ~ 12.31.(2개월)
근로형태	시간제 일자리
인원	(국립공원 청소원) 382명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180명 (국립공원 산불감시원) 362명
인건비	월 210만원
선발기준	- 공개채용, 자격제한 없음 - 공원 내(인근) 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
주요업무	(국립공원 청소원) 국립공원 내 탐방로 정화 활동, 불법행위 단속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 국립공원 내 해변 미화 및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국립공원 산불감시원) 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탐방객 계도 및 산불취약지구 순찰 등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에 더해, 환경부는 2018년 일반예비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18년 4월 발생한 폐비닐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¹⁾ 중 하나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및 분리선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홍보를 통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 사업의 예비비를 4억 6,6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집행하였다.

1)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18.5)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 사업 예비비 집행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예비비	466백만원 (한국폐기물협회 민간대행)
운영기간	분리배출 도우미 고용기간: 총 12일 - '18.11.19. ~ 11.30 기간 중 6일 근무 - '18.12. 1. ~ 12.14 기간 중 6일 근무
근로형태	시간제 일자리
인원	935명
인건비	일 36,000원
선발기준	- 지자체에서 불법투기 취약지역 인근 주민 등을 선발(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
주요업무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방법 교육·홍보 - 분리배출현장 안내 실시 및 모니터링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예비비²⁾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상 신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일반예비비를 통해 추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들의 경우, 건조경보일수 증가³⁾ 등 건조기후로 인한 가을철 산불발생 가능성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인력의 집중적인 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 태풍과 내륙호우로 인해 증가된 해양쓰레기가 야기하는 생태계오염, 지역의 어업활동 지장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해양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청소원 운영 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 중 공원운영비의 청소비 및 자원보호비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공원 내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사업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고, 일반예비비는 주로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 환차손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된다.

3)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조경부일수가 '17년 10일에서 '18년 34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의 산불 발생현황 또한 '17년 11건 0.81ha에서 '18년 73건 54.54ha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 중 예비비 관련 사업의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소)

구 분		예산(예비비)	운영기간	기존 운영인원 (단기일자리)	운영
산불 감시원	2018	390(927)	3월~5월	218(362)	소공원 (21)
	2017	390		228	
	2016	390	11월~12월	223	
국립공원 청소원	2018	9,805(1,279)	연중	308(382)	소공원 (21)
	2017	10,168		308	
	2016	9,616		308	
해양 쓰레기 수거	2018	756(504)	연중	60(180)	해상공원 (6)
	2017	756		60	
	2016	-		-	

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폐비닐 및 재활용쓰레기 대란 문제가 '18년 4월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 대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 도우미 고용기간이 총 12일에 그치고 있어, 단순히 단기적 대책으로는 동 사업이 목적으로 한 지역주민의 분리배출 의식 고취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국회의 사후 승인만을 요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은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지출을 확대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 소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향후 예비비의 집행률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국립공원공단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명예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167
2	(주)위터웨이플러스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법률상 공시의무 위반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178
3	한국환경공단의 지침을 위반한 국외연수 휴직시 보수 지급 규정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184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상 편성 후 환경부 자체 경영평가 성과급 집행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197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결산상 문제점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200
6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완료한 다목적댐 발전수의 처리방안 마련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207
7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개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Ⅲ」 pp.214



고용노동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69억 1,700만원이며, 1,151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9.6%인 686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462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3,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6,714	86,714	86,714	110,056	67,950	41,876	230	61.7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03	203	203	1,345	323	1,022	0	24.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3,738	403	3,336	0	10.8
합계	86,917	86,917	86,917	115,139	68,676	46,234	230	59.6

자료: 고용노동부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659억 5,900만원이며, 이 중 92.4%인 5조 6,064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68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833,016	5,896,996	5,902,337	5,443,072	2,590	456,876	92.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0,900	80,900	80,900	80,884	0	16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82,522	82,522	82,522	82,522	0	0	100.0
합계	5,996,438	6,060,418	6,065,959	5,606,478	2,590	456,892	92.4

자료: 고용노동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5조 4,221억 1,200만원이며, 49조 911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0%인 44조 1,740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7,234억 8,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935억 7,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4,957,342	14,957,342	14,957,342	18,785,775	17,185,899	1,507,458	92,419	91.5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1,390,450	1,390,450	1,390,450	2,039,912	2,019,694	19,364	855	99.0
고용보험기금	17,269,517	17,269,517	17,269,517	23,760,706	22,387,581	1,325,158	47,967	94.2
임금채권보장기금	1,448,514	1,448,514	1,448,514	2,942,071	1,085,986	1,808,312	47,772	36.9
근로복지진흥기금	356,289	356,289	356,289	1,562,656	1,494,898	63,191	4,566	95.7
합계	35,422,112	35,422,112	35,422,112	49,091,120	44,174,058	4,723,483	193,579	90.0

자료: 고용노동부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35조 4,221억 1,200만원이며, 이 중 78.0%인 27조 6,237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65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81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4,957,342	14,957,342	14,957,342	10,778,407	0	16,804	72.1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1,390,450	1,390,450	1,390,450	1,250,994	0	9,760	90.0
고용보험기금	17,269,517	17,269,517	17,270,196	14,472,420	6,579	501,190	83.8
임금채권보장기금	1,448,514	1,448,514	1,448,514	813,742	0	36,167	56.2
근로복지진흥기금	356,289	356,289	356,289	308,183	0	4,272	86.5
합계	35,422,112	35,422,112	35,422,791	27,623,746	6,579	568,193	78.0

자료: 고용노동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5,122억 4,000만원(11.3%)이 감소한 19조 8,55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4,407억원 3,900만원(7.8%)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9,435	86,714	86,714	67,950	△18,764	△31,485
기금	18,315,598	22,194,584	22,194,584	19,787,822	△2,493,476	1,472,224
합계	18,415,033	22,281,298	22,281,298	19,855,772	△2,512,240	1,440,739

자료: 고용노동부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914억 3,900만원 (4.8%)이 감소한 23조 8,985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조 452억 8,500만원(33.9%)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220,753	5,996,438	6,060,418	5,443,072	△617,346	3,222,319
기금	15,632,537	17,806,833	19,029,596	18,455,503	△574,093	2,822,966
합계	17,853,290	23,803,271	25,090,014	23,898,575	△1,191,439	6,045,285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37조 7,116억 6,300만원, 부채는 20조 3,886억 1,9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조 3,230억 4,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조 6,815억 4,000만원, 투자자산 28조 1,389억 4,100만원, 일반유형자산 2조 8,264억 3,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47억 7,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747억 4,600만원(1.3%) 증가하였다. 이는 여유자금 운용수익금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 4,015억 6,300만원 증가, 보험료 수납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812억 5,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95억 3,400만원, 장기차입부채 118억 9,100만원, 장기충당부채 295억 2,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0조 2,576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1,637억 1,000만원(18.4%) 증가하였다. 이는 고용보험 법정적립금 증가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조 1,241억 1,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711,663	37,236,917	474,746	1.3
Ⅰ. 유동자산	6,681,540	6,600,287	81,253	1.2
Ⅱ. 투자자산	28,138,941	27,737,378	401,563	1.4
Ⅲ. 일반유형자산	2,826,436	2,825,143	1,293	0.05
Ⅳ. 사회기반시설	0	0	-	-
Ⅴ. 무형자산	9,974	6,504	3,470	53.4
Ⅵ. 기타비유동자산	54,772	67,605	△12,833	△19.0
부 채	20,388,619	17,224,909	3,163,710	18.4
Ⅰ. 유동부채	89,534	58,798	30,736	52.3
Ⅱ. 장기차입부채	11,891	4,495	7,396	164.5
Ⅲ. 장기충당부채	29,524	28,056	1,468	5.2
Ⅳ. 기타비유동부채	20,257,671	17,133,560	3,124,111	18.2
순 자 산	17,323,043	20,012,008	△2,688,965	△13.4
Ⅰ. 기본순자산	1,643,105	1,643,105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906,754	15,345,207	△1,438,453	△9.4
Ⅲ. 순자산 조정	1,773,184	3,023,696	△1,250,512	△41.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조 1,829억 6,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5조 6,664억 7,7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776억 4,600만원, 비배분비용 3,509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589억 6,000만원, 비배분수익 7,664억 8,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8조 9,866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조 6,230억 1,200만원(49.1%) 증가한 26조 1,696억 1,200만원이며, 이는 사업비 및 법정적립금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8조 2,910억 8,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고용정책 프로그램(14조 8,316억 9,900만원)과 산재보험 프로그램(5조 3,599억 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출연비 5,368억 3,400만원과 인건비 3,665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236억 4,0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52억 1,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5,507,517	17,216,430	8,291,087	48.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5,666,477	17,367,515	8,298,962	47.8
나. 프로그램 수익	158,960	151,084	7,876	5.2
II. 관리운영비	1,077,646	938,031	139,615	14.9
III. 비배분비용	350,932	430,487	△79,555	△18.5
IV. 비배분수익	766,482	1,038,349	△272,867	△26.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6,169,612	17,546,600	8,623,012	49.1
VI. 비교환수익 등	18,986,644	17,398,493	1,588,151	9.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7,182,968	148,107	7,034,861	474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20조 120억 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조 3,230억 4,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6,889억 6,500만원(13.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7조 1,829억 6,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2,505억 1,200만원,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조 7,445억 1,4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체재금수익 등 채원의 조달 5조 8,131억 9,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채원의 이전 686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조 2,490억 6,5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5억 4,700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1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0,012,008	17,081,478	2,930,530	17.2
II. 재정운영결과	7,182,968	148,106	7,034,862	4,74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744,514	2,340,058	3,404,456	145.5
IV. 조정항목	△1,250,512	738,578	△1,989,090	△269.3
V. 기말순자산(I-II+III+IV)	17,323,043	20,012,008	△2,688,965	△13.4

자료: 고용노동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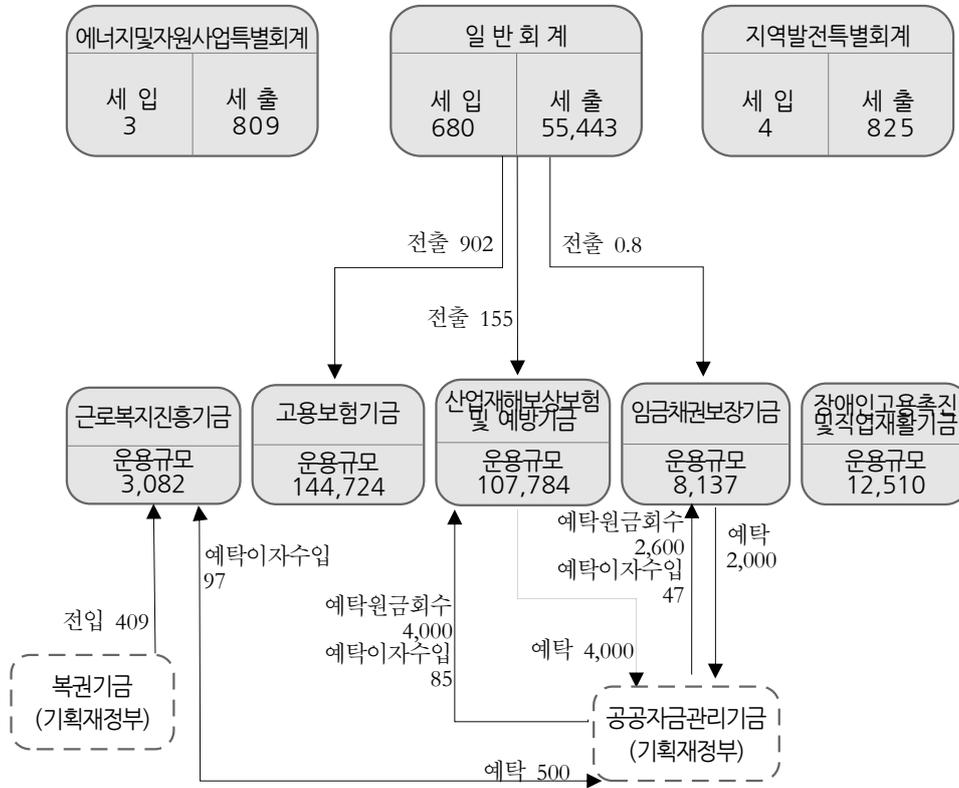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902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55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기금으로 0.8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4,000억원, 예탁이자수입 86억원을 받고, 공자기금에 4,0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2,600억원, 예탁이자수입 47억원을 받고, 공자기금에 2,000억원을 예탁하였다. 한편,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409억원을 전입받았으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수입 97억원을 받고, 공자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②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③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382억원, 고용보험기금 340억원이 감액(일반회계 2,230억원→1,848억원, 고용보험기금 2,046억원→1,706억원)되었고,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지원인원 축소(2만명→1.5만명)에 따라 500억원이 감액(4,415억원→3,915억원)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은 2017년 중장년층 참여인원과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300억원이 감액(5,329억원→5,029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②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사업 등이 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임금수준 확대를 위해 1,911억원이 증액(7,021억원→8,932억원)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은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적인 지원 및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정성 도모를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700억원→900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②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에서의 현금 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최저임금 결정 관련하여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한 신규채용 요건, 임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사업, ② 청년센터 운영 사업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사업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43억원이 감액(497억원→454억원)되었으며,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이 감액(96억원→76억원)되었다⁴⁾.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5.

고용노동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확산을 위해 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노동시장 격차해소, ②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2018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 지역발전)와 5개의 기금(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근로복지진흥)에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8년도 추경이 편성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사업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인해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 사업들은 한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대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규모별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8,082억원 적자로,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적정한 지출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재기금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지출 구조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사업장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집행액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자 질병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 및 문화개선, 정보화 등 간접적으로 재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중 일부도 집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및 문화개선, 정보화 등 간접적으로 재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산재기금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률이 제고되었으므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등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업 목적 상 적정한 지원 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비 지원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2018년 추경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사업 결산 분석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3,417억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4,258억원을 편성하였다.¹⁾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²⁾의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업주에게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3,416억 6,200만원 중 3,32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³⁾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이 일정 규모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약정 기간 종료 시 적립금액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4,251억 7,600만원 중 4,20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9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392,616	549,410	25	0	549,435	476,429	86.7	0	73,006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193,000	341,662	0	0	341,662	332,067	97.2	0	9,595
청년내일채움공제	355,460	425,176	0	0	425,176	420,213	98.8	0	4,963
(일반회계)	184,820	216,400	0	0	216,400	215,828	99.7	0	572
(고용보험기금)	170,640	208,776	0	0	208,776	204,385	97.9	0	4,391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일반회계(청년 지원분), 고용보험기금(기업 지원분)에 각각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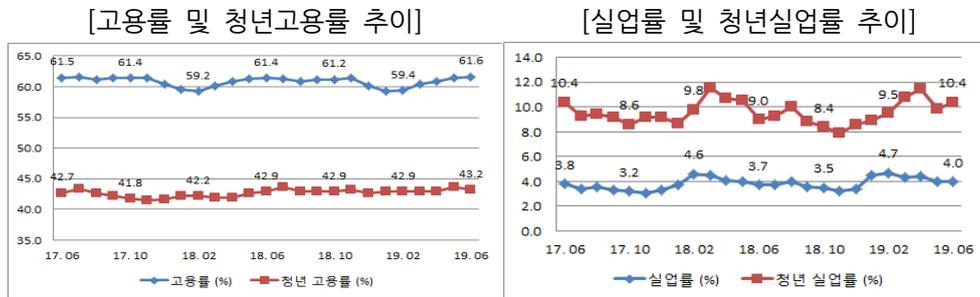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 의결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상담센터 구축을 위하여 6억 1,500만원은 고객상담센터지원 사업으로 자체변경하여 최종 기금 수정계획액은 2,088억원이다.
- 2)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
- 3) 코드: 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

1-1.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정지출 부담 증가 및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2019년 6월 청년 고용률은 43.2%, 청년 실업률은 10.4%로, 전년 동월(61.4%) 대비 고용률은 개선(+0.2%p)되었으나, 동시에 실업률은 전년 동월(9.0%) 대비 악화(+1.4%p)되었다. 또한,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2018년 6월 5.3%p에서 2019년 6월 6.4%p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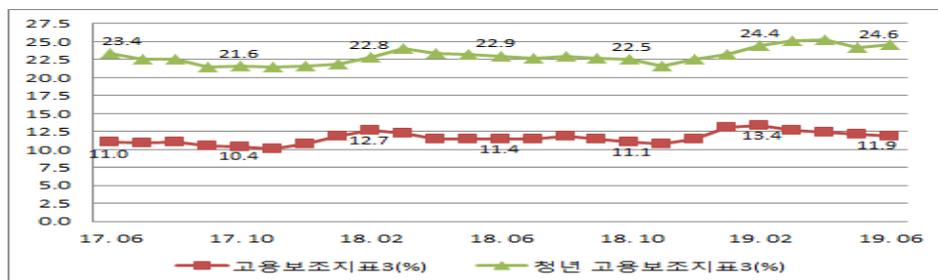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7.)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 지표와 청년층 지표간의 격차가 2019년 6월 12.7%p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4.6%로, 2018년 7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 추이]



주: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와 같이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일자리대책 주요 사업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지출 규모 증가 추이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분석의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재정지출 규모는 추경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

2018년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추경증액분 1,487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3,417억원 중 3,3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2만 8,275명의 추가채용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경증액분 704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4,252억원 중 4,20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0만 6,402명이 신규 가입하였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목표인원			지원인원
		본예산	추경증액분	합계		본예산	추경증액분	합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017	0	48	48	17	0	900	900	290
	2018	1,930	1,487	3,417	3,320	45,000	45,000	90,000	128,275
	2019	6,745	(2,883) ¹⁾	6,745	-	98,000	(32,000)	98,000	-
	합계	8,675	1,532	10,210	3,337	143,000	45,900	188,900	128,565
청년내일 채움공제	2017	1,562	408	1,970 ²⁾	1,077 ³⁾	50,000	5,000	55,000	40,170
	2018	3,554	704	4,258 ⁴⁾	4,202	50,000	60,000	110,000	106,402
	2019	9,971	-	9,971	-	100,000	-	100,000	-
	합계	15,087	1,112	16,169	5,279	240,000	25,000	265,000	146,572

- 주: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9년도 추경안에 2,883억원 증액분이 편성되었음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일반회계)의 취업지원금 부족으로 23억 1,400만원 전용
 3)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고용보험기금)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예산에 혼재하여 편성되어 있음, '18년부터 분리편성
 4)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상담창구 개선을 위해 고객상담센터 지원 사업(고보기금)으로 6억 1,500만원 계획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9년 본예산을 포함하여 총 1조 2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1조 6,1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7~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지원자가 13만여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혜자가 15만여명으로, 동기간 평균 청년 취업자 수가 390만명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약 7%의 청년 취업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규모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재정소요액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계획한 「2018~2022년도 중기사업계획서」 상 중기 재정소요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대비 2018년은 1.8배, 2019년은 1.5배 증가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대비 2018년 1.2배, 2019년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기간은 2~3년으로, 2018~2019년 신규지원분 증가가 2022년까지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2018년~2022년까지의 중기재정소요액도 당초 계획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 재정소요 대비 예산 편성액]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기재정계획	1,930	4,405	6,485	5,701	3,201	21,722
	예산	3,397	6,745	-	-	-	10,142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기재정계획	3,554	6,779	7,819	8,282	8,295	34,729
	예산	4,258	9,971	-	-	-	14,23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사업의 예산이 중기재정계획 대비 증가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출규모를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추경으로 신규로 편성된 이후, 2018년에도 당초 지원인원 2만명에서 추경 편성 이후 4.5배인 9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이어 2019년에도 추경안을 제출하여 추가인원을 확보하는 등 연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인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년 추경을 통해 인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주요 사업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3년형은 신규지원이 2021년에 종료되는 한시 사업으로, 종료 이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들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재직자의 소득 보전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속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종료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mismatch 문제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시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규모 증가만으로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mismatch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 관리 필요

가. 현황

2018년도 추경 편성 당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규유형 운영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경우, 시작 당시에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하여 3인을 신규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년 추경 편성 이후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규모를 인상(1인당 667만원 → 900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제도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2018년 추경)
지원 대상	성장유망업종	전체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추가
지원 요건	3명 고용 시 1명 지원	(30명 미만) 1명 고용시부터, (30~99명) 2명 고용시부터, (100명 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 금액	1명당 연 667만원 (3명 기준 연 2,000만원)	1명당 연 900만원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명당 연 1,400만원
한도	기업당 9명(+1명 기준 3명)	기업당 9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는 2년형만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 추경으로 3년형이 신설되었다.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간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청년이 적립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단위: 만원)

구분	약정 기간	적립 금액				기업 지원금 (정부→기업)
		청년	기업	정부 ¹⁾	계	
2년형	2년	300	400	900	1,600	500
3년형	3년(신설)	600	600	1,800	3,000	750

주: 1) 정부 적립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며,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18년 추경으로 두 사업의 제도 개선이 진행되었으므로, 제도 개선 이후의 사업 집행 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기업규모별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규모 별 차등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8년 추경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 외의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규모를 인상(1인당 667만원 → 900만원)하였다.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인원은 30인 미만 기업이 48.1%, 30~99인 23.6%, 100인 이상 28.3%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30인 미만 기업이 78.9%로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집행액	집행인원(A)		참여기업 수(B)		기업당 평균 지원 인원(A/B)
		비율	비율	비율	비율	
30인 미만	163,829	61,727	48.1	23,338	78.9	2.6
30~99인	78,559	30,305	23.6	4,417	14.9	7.1
100인 이상	88,366	36,243	28.3	1,816	6.1	19.9
합계	330,754	128,275	100.0	29,571	100.0	4.3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 채용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0인 미만 기업은 전년 대비 81.5%인 48,106명이 증가하였으며, 30~99인 기업은 전년 대비 35.6%인 17,146명, 100인 이상 기업은 16.0%인 15,140명이 증가하여 소규모 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 기업의 채용인원 증가율]

(단위: 명, %)

구분	참여기업수	총 청년 채용인원		전년 대비	
		2017(A)	2018(B)	증가(B-A)	증가율 ((B-A)/A)
30인 미만	23,338	59,025	107,131	48,106	81.5
30~99인	4,417	48,162	65,308	17,146	35.6
100인 이상	1,816	94,627	109,767	15,140	16.0
합계	29,571	201,864	282,206	80,342	39.8

주: 채용인원은 전체 채용 인원으로, 신규 채용이나 기존 피보험자수 이상의 추가채용이 아닌 경우
 우나 지원한도를 넘는 경우 등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지 않는 인원을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 특성 상 기업 내의 추가고용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어 장려금 지급 없이도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중손실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추경 이후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려금 지원을 받는 기업 중 지원 없이도 추가고용이 가능한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으며, 재정지출 소요 증가만큼 그 효과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대상 사업장의 기업 규모 확대 이후 추가고용 장려금의 사중손실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는지 기업규모별 장려금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별 장려금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청년 추가채용 창출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히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중도해지율 및 공제 만기해지자의 고용유지율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총 15만명으로,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3만 1,412명이 중도해지하여 전체 중도해지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 현황]

(단위: 명, %)

가입시점	청약가입인원(a)		중도해지 인원(b)	중도해지 비율	기타 ¹⁾	공제 가입 유지자(a-b)	
	목표(추경)	실적					
2016년	10,000	5,217	2,084	39.9	123	3,010	
2017년	55,000	40,170	12,945	32.2	1,678	25,547	
2018년	2년형	90,000	87,512	15,148	17.3	287	72,077
	3년형	20,000	18,890	1,235	6.5	82	17,573
	합계	110,000	106,402	16,383	15.4	369	89,650
총계	175,000	151,789	31,412	20.7	2,170	118,207	

주: 1) 기타는 연말 통계 마감 후 취소·철회한 경우임

1.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시점별로 가입유지율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가입자의 12개월 유지율은 81.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73.3%, 2017년 76.2%보다 소폭 높아진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율 현황]

(단위: 명, %)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년형	3년형	합계
가입자 수	5,217	40,170	87,512	18,890	106,402
1개월 유지율	99.0 (5,164/5,217)	99.6 (40,013/40,170)	100.0 (87,512/87,512)	100.0 (18,890/18,890)	100.0 (106,402/106,402)
6개월 유지율	86.7 (4,522/5,217)	90.0 (36,164/40,170)	93.6 (76,103/81,272)	95.9 (17,204/17,943)	94.0 (93,307/99,215)
12개월 유지율	73.3 (3,823/5,217)	76.2 (30,623/40,170)	81.0 (39,103/48,265)	-	81.0 (39,103/48,265)

(단위: 명, %)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년형	3년형	합계
18개월 유지율	64.1 (3,344/5,217)	66.2 (24,387/36,831)	-	-	-
24개월 만기율	57.7 (3,010/5,217)	68.8 (7,380/10,729)	-	-	-

주: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18년도 가입자 중 2년형은 아직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고, 3년형의 경우 추경 이후 시작되어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중도해지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18년부터 2년 만기에 따른 만기금 수령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기준 만기금 수령자는 5,507명으로, 이 중 73.9%인 4,068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자 고용유지 현황]

(단위: 명, %)

만기금 수령자(A)	고용 유지자(B)	고용유지율(B/A)
5,507	4,068	73.9

주: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소득 감소 등으로 고용유지율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공제 가입자의 가입유지율 및 공제 만기수령자의 고용유지율 등에 대해 분석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가. 현 황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78조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재원은 보험료,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8,082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금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수입(A)	90,364	102,442	101,362	107,696	122,573
	지출(B)	81,245	88,672	94,607	115,778	126,849
	재정수지(A-B)	9,119	13,769	6,755	△8,082	△4,275
	누적적립금(C)	82,106	95,850	102,544	94,452	90,177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5~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며, 각 계정은 다시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이하 '고안직능계정')의 2개 계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2)

2018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근로자 계정의 실업급여계정, 고안직능계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계정의 고안직능계정에서 5,374억 적자, 실업급여계정에서 2,750억 적자가 각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8년 고안직능계정의 누적적립금은 3조 8,886억원이며, 실업급여계정의 누적적립금은 5조 5,201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26,867	31,995	29,795	31,193	33,103
		지출(B)	26,220	30,064	31,699	36,566	37,148
		재정수지(A-B)	647	1,931	△1,904	△5,374	△4,045
		누적적립금(C)	44,281	46,198	44,264	38,886	34,841
		적립금배율(C/B)	1.7	1.5	1.4	1.1	0.9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63,415	70,340	71,476	76,407	89,347
		지출(B)	54,978	58,557	62,858	79,157	89,641
		재정수지(A-B)	8,437	11,783	8,618	△2,750	△294
		누적적립금(C)	37,600	49,371	57,957	55,201	54,908
		적립금배율(C/B)	0.7	0.8	0.9	0.7	0.6
자영 업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9	17	11	12	14
		지출(B)	9	13	12	13	14
		재정수지(A-B)	0	4	△1	△1	1
		누적적립금(C)	70	74	73	73	73
		적립금배율(C/B)	7.8	5.7	6.1	5.6	5.3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73	91	79	85	109
		지출(B)	38	38	37	42	46
		재정수지(A-B)	35	52	42	43	63
		누적적립금(C)	155	207	249	292	354
		적립금배율(C/B)	4.1	5.4	6.7	7.0	7.7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5~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2) 근로자계정의 실업급여계정에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 사업과 산전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이 포함되며, 고안직능계정에는 신규고용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포함된다.

나. 분석의견

2018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지속적으로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적립배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1.5~2배이다.³⁾

그러나 2018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 적립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까지 소폭 상승하던 적립배율은 2018년부터 다시 낮아졌으며, 2019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근로자계정 내 실업급여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A)	63,415	70,340	71,476	76,407	89,347
지출(B)	54,978	58,557	62,858	79,157	89,641
재정수지(A-B)	8,437	11,783	8,618	△2,750	△294
누적적립금(C)	37,600	49,371	57,957	55,201	54,908
적립금배율(C/B)	0.7	0.8	0.9	0.7	0.6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년도 재정수지

2. 2015~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정의 주된 지출 증가 원인은 구직급여 수급액 증가로 인한 것이다.

3)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2018년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06만 7,000명, 수급자 수는 139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3.0%, 9.3% 증가하였다. 2019년도 1사분기도 전년 대비 신청자 및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자 수]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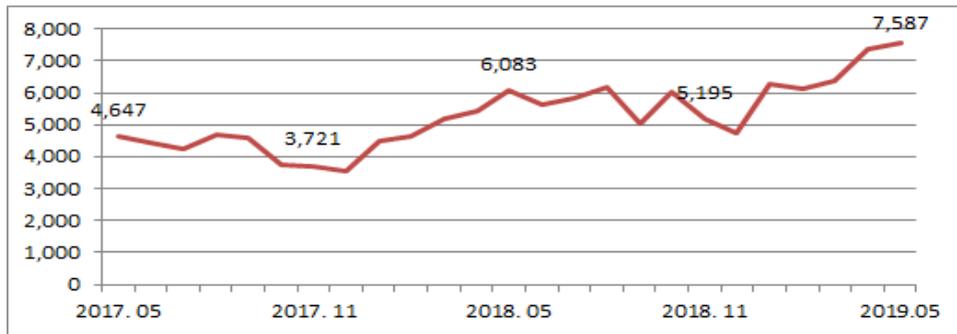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사분기	1사분기	
신청자	95.5	95.8	94.4	106.7	34.7	37.6
수급자	127.2	127.9	127.3	139.2	62.8	6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및 고용보험통계

또한, 구직급여 신청 증가로 인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또한, 2019년 8월 2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⁴⁾으로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향조정, 소정급여일수 연장이 적용됨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향후 5년간 현행 적립금배출 수준 0.7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⁵⁾

4)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반영 시 근로자계정 내 실업급여계정 재정전망]

(단위: 조원, 배)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A) ¹⁾	10.8	11.5	12.2	12.9	13.5
지출(B) ²⁾	10.4	11.2	11.9	12.2	12.5
-실업급여 ³⁾	8.8	9.5	10.1	10.2	10.5
-모성보호 ⁴⁾	1.5	1.5	1.7	1.8	1.9
재정수지(A-B)	0.4	0.3	0.3	0.7	1.0
누적적립금(C)	4.7	5.0	5.3	6.1	7.1
적립금배율(C/B)	0.5	0.5	0.4	0.5	0.6

주: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비의 30%) 포함

2) 의무지출(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재량지출(기금운영비 포함) 모두 포함하나, 상세내역은 의무지출만 제시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실업급여 계정의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의무지출로, 향후 재정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적정한 지출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소정급여일수	90~240일	120~270일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1, 제69조의6 별표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50%	기초일액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의 90%	최저기초일액의 8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5)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2019.8.)의 “Ⅲ. 국세외수입 분석(8대 사회보험)” 참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수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실업급여 계정과 달리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⁶⁾ 반면, 지출은 실업급여 계정과 달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재량지출 성격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 결산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는 5,374억원 적자로, 2017년 이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신규 사업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근로자계정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A)	26,867	31,995	29,795	31,193	33,103
지출(B)	26,220	30,064	31,699	36,566	37,148
재정수지(A-B)	647	1,931	△1,904	△5,374	△4,045
누적적립금(C)	44,281	46,198	44,264	38,886	34,841
적립금배율(C/B)	1.7	1.5	1.4	1.1	0.9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5~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7년 48억원에서 2018년 3,417억원, 2019년 6,74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계획액도 2017년 1,260억원에서 2017년 2,088억원, 2019년 4,23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추

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고용보험료율]

규모	보험료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0.2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0.45%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사업주	0.65%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주	0.85%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사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외의 고용창출장려금(2018년 결산 기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외 1,457억원), 고용유지지원금(692억원), 고용안정장려금(1,054억원),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사업(7,038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5,90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기간이 2~3년임을 고려했을 때, 신규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부담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액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¹⁾		
	계획액(수정)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수정)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17	48	17	35.8	1,260	763	60.5
2018	3,417	3,320	97.2	2,088	2,044	97.9
2019	6,745	-	-	4,232	-	-

주: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반회계(청년 지원금), 고용보험기금(기업 지원금) 내 각각 편성되는데, 해당 수치는 고용보험기금 계획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17년의 경우 기존 청년인턴제 잔여사업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속적인 재량 지출 증가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 및 확대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향후 안전망 강화 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업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지출 규모 계획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출 규모를 검토하여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은 보험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산재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보험급여의 지급, 공단에의 출연, 재해예방사업,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2018년도 산재기금의 수입은 10조 7,784억원이고, 이 중 사업비로 5조 5,513억 원을 집행하였다. 사업비 외 지출은 공자기금 예탁 4,000억원, 여유자금운용 4조 4,275억원 등이다.

[2018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수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 자금 회수
	부담금	융자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107,784	73,528	1,234	3,821	1,127	79,709	155	4,087	4,242	23,833
지출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107,784	55,513		4,000		3,996		44,275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분석의견

산재기금의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산재기금 재정수지는 2조 442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산재기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흑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증가하여, 2015년 11조 8,990억원에서 2018년 17조 8,91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A)	66,350	71,135	72,895	79,951	84,486
지출(B)	49,727	51,473	53,078	59,509	59,807
- 보험급여	40,791	42,800	44,360	50,339	50,670
- 연금	17,973	18,797	19,712	21,283	22,030
- 일시금	22,818	24,003	24,648	29,056	28,640
재정수지(A-B)	16,623	19,662	19,817	20,442	24,679
누적적립금	118,990	138,653	158,470	178,912	203,591

주: 1. 연말적립금=전년도 연말적립금+당해연도 재정수지
 2. 2014~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자산운용 규모는 17조 8,271억원으로, 수익률은 △2.00%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연도별 자산운용 현황]

(단위: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용 대상 적립금	102,477	118,991	138,205	157,893	178,271
당기 수익률	1.77	2.93	3.31	5.83	△2.00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산재기금의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2)에서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재해예방 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으로 전체 기금 지출액의 8.3%가 지출되었으나, 2015년 10.6% 이후 2016년 9.8%, 2017년 9.5%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해예방에 따른 지출은 2015년 4,133억원에서 2018년 3,58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2015년 1,167억원에서 2018년 1,33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에 따른 지출의 비중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산재기금 재해예방 사업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기금 지출 총액(A)	49,846	51,694	53,129	59,256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 (재해예방)에 따른 용도(B)	4,133	3,877	3,768	3,5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C)	1,167	1,220	1,278	1,336
비중(B+C)/A	10.6	9.8	9.5	8.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산업재해예방(4100 프로그램)으로 분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내의 11개 사업은 ① 현장 지도·감독, ② 안전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③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및 보조금 지원, ④ 질병 예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결산 집행 내역을 보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사업과 용자 및 보조금 사업의 집행액은 각각 연평균 1.3%, 12.9%씩 감소하는 반면, 현장 지도·감독 및 질병예방 사업은 연평균 0.3%, 27.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재해예방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증감율(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재해예방 합계	387,708	382,577	376,777	371,988	358,161	344,192	△5.1
① 현장 지도·감독	53,144	52,317	53,379	52,494	53,130	52,606	0.3
업종별재해예방	46,497	45,990	46,631	46,046	47,121	46,715	0.8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6,647	6,327	6,748	6,448	6,009	5,891	△3.5
②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43,523	41,713	47,734	45,857	41,950	40,642	△1.3
산재예방시설건립	2,690	2,670	7,000	6,000	700	688	△49.2
안전보건문화정착	30,858	29,368	27,649	27,075	29,094	28,249	△1.9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6,070	5,776	7,570	7,271	6,470	6,111	2.9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운영	3,905	3,899	5,515	5,511	5,686	5,594	19.8
③ 용자 및 보조금	253,635	251,792	230,968	229,778	191,319	191,208	△12.9
산재예방시설용자	176,350	174,531	166,276	166,054	122,794	122,758	△16.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77,285	77,261	64,692	63,724	68,525	68,450	△5.9
④ 질병 예방	37,406	36,755	44,696	43,859	71,762	59,736	27.5
유해작업환경개선	17,523	17,377	21,966	21,708	49,026	37,897	47.7
근로자건강보호	19,883	19,378	22,730	22,151	22,736	21,839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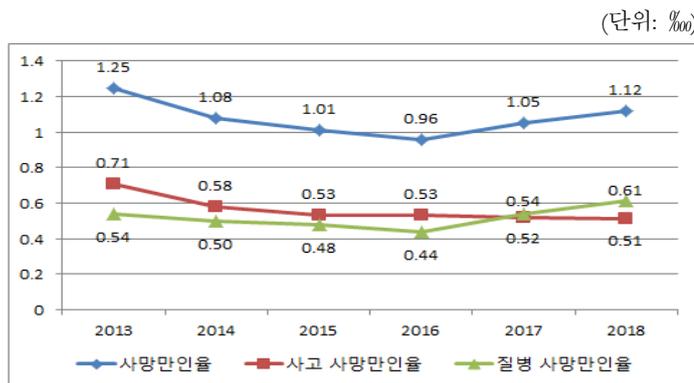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산업안전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 1만명 당

3)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은 2017년부터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컨설팅 비용이 신규편성되면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소속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다. 다만,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내 비용지원 사업은 2018년 예산액 400.5억원 중 72.8%인 291.8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치는 등 해당 사업장의 참여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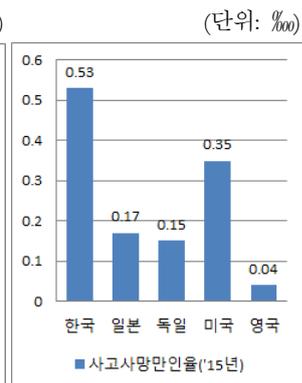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2018년 1.12‰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선진국의 1.5~3.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추이]



자료: 통계청

[사고만인율 국제비교]



자료: 통계청

이처럼 산업현장 안전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⁴⁾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재기금의 재해예방 사업 지출은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만인율 등 산업현장 안전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산재기금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까지 확대하고,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검토

가. 현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¹⁾은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16.4%) → 2019년 8,350원(10.9%, 시급 8,350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한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조 9,737억 1,900만원 중 85.6%인 2조 5,46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72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자리안정 자금지원	2,970,769	2,970,769	2,950	±2,211	2,973,719	2,546,458	85.6	0	427,261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최저임금의 120% 이하(2018년 월 평균 190만원 이하)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혹은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연중 신청하면 희망지급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며, 2019년도에는 2018년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2-300

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업종은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수준) 노동자 지원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지원한도	매월 최대 29인까지 지원
관련혜택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담액 50%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방식	현금 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대납)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64.1만명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장의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인원이 117만 명(44.3%), 5인~10인 미만 58만 명(21.8%), 10~30인 미만 55만 명(21.0%), 30인 이상 34만 명(12.9%)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도·소매 52만 명(19.7%),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21만 명(8.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

(단위: 천명)

업종(대분류)	규모				
	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인이상
계	2,641.6	1,170.1	576.8	554.1	340.6
농림어업	16.4	8.2	5.0	2.9	0.3
광업	0.5	0.2	0.1	0.2	0.0
제조업	475.7	172.1	127.2	160.2	16.2
전기·가스·증기	0.9	0.4	0.1	0.4	0.0

(단위: 천명)

업종(대분류)	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인이상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8.7	3.5	2.5	2.2	0.5
건설업	88.9	51.1	27.0	10.5	0.3
도매 및 소매업	520.3	314.9	117.4	82.0	6.0
운수 및 창고업	100.0	24.5	12.7	25.3	37.5
숙박 및 음식점업	366.8	202.9	89.2	66.5	8.2
정보통신업	57.8	26.4	14.1	15.8	1.6
금융 및 보험업	7.7	4.5	1.8	1.3	0.1
부동산업	150.4	38.2	30.6	37.8	4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0.6	70.2	36.9	29.1	4.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90.0	39.1	24.9	44.8	181.1
교육서비스업	54.1	34.3	10.8	8.4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2.8	92.6	45.8	37.2	3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35.4	21.1	7.5	6.0	0.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95.2	46.6	23.1	23.5	2.0
기 타	19.4	19.3	0.0	0.1	-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률이 제고되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월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11월까지 집행률이 59.5%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연말 신규 지원인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집행률이 84.2%로 나타났다.

월별 신규 신청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월 82.7만명으로 신청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10월부터 소폭 증가하여 12월 51.6만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월별 신규 지원인원 추이 또한 3월 50.1만명 이후 9월까지 감소하였으나, 10월 이후 다시 증가하여 12월 58.3만명이 지원인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월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집행 내역(누적)]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인원	81	908	1,492	1,840	2,015	2,143	2,247	2,339	2,412	2,541	2,704	3,220
신규	-	827	584	348	175	128	104	92	73	129	163	516
지원 인원	-	76	577	1,068	1,302	1,417	1,590	1,693	1,764	1,867	2,059	2,642
신규	-	-	501	491	234	115	173	103	71	103	192	583
집행액	-	96	1,077	2,828	5,089	7,336	9,283	11,170	13,023	15,015	17,437	24,657
집행률	-	0.3	3.7	9.7	17.4	25.0	31.7	38.1	44.5	51.3	59.5	84.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노동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시행 초기에 신청절차 및 내용 등이 복잡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시행 과정에서 지원 기준, 절차, 대상 확대 등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을 총 13차례 개정하였다.²⁾ 또한, 2018년에 변경된 운영 규정 중 퇴사자 소급지원, 고용유지의무 한시적 면제 등은 2019년 하반기 다시 강화되는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³⁾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는 입장이다.

2)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원 도중 30인 초과사업장에 대해 29인까지 계속 지원하는 내용, ②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허용, ③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2019년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규정 개정 내용]

구분	2018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	·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하지 않음
지원 요건	· 지원대상자 고용유지 의무. 다만, 고용조정 사업장은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증빙자료 제출)하면 계속 지원	
	* 10인 미만은 간편 서식 가능	* 10인 미만도 입증 자료 제출 * 30인 사업장은 고용조정 시 지원 제외

그러나 잦은 지침 개정은 지원 대상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 계획 시 집행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복적인 지침 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여 연중 지나친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업 목적 상 적절한 지원 방식이 아니므로,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였다.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바우처 이용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와 지원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⁵⁾

4) 고용노동부는 당초 지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 |
|--|
| <p>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p> <p>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p> <p>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p> <p>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시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p> <p>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지정)된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p> <p>⑥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p> |
|--|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2017.12.

그러나 2018년 바우처이용 지원금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되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에서 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가 낮아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기관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별도 기준⁶⁾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2019년 1월에 2차례 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⁷⁾

그 결과 2018년도 직접지원, 바우처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총 50,804명에게 485억원이 지급되었다. 자활기업은 313개소, 1,240명에 대해 10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67개소, 1,716명에 대해 12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601개소, 38,789명에 대해 405억 4,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492개소, 9,059명에 대해 56억 7,700만원이 지급되었다.

5)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산출 내역]

인건비						실질 인건비 소계 (G=D+E+F)	순수 기관 운영비 (H)	서비스 단가 (I=G+H)
직접 인건비(75%)			사업자부담분					
최저 시급 (A)	주휴 수당 (B)	연차 수당 (C)	직접인건비 소계 (75%) (D=A+B+C)	4대 보험 (E)	퇴직 총당금 (F)			
7,530원			2,060원			9,590원	1,070원	10,760원

- 6) 바우처 지원 기관의 최저임금 지원은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며, 해당 산식은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174시간(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3만원/명” 이다. 다만, 2019년도부터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인당 13만원으로 변경하였다.
- 7) 2018년 9월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종사자 규모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2018년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역]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수	지급자수	지급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573	50,804	48,541
자활기업	313	1,240	1,0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7	1,716	1,237
장애인활동지원기관	601	38,789	40,5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92	9,059	5,677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경영수입이 아닌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일자리안정 자금은 한시사업으로, 낮은 지원수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 수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은 지원 신청, 심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며 국비 지원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8년 추경예산을 통해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업과 청년센터 운영사업에서 청년센터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업¹⁾에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존 고용복지+센터 내에 청년센터 6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3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총 8개소의 청년센터를 구축하였다.

[직업안정기관운영 청년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편성 내역		예산 집행 내역			
- 고용복지+센터 내 시설 리모델링 : 11억 9,700만원(1억 9,950만원 × 6개소)		인천	262	대구서부	50
		성남	259	광주	36
- 비품 및 장비구입 : 120백만원(2,000만원 × 6개소)		수원	131	전주	249
		부산북부	90	천안	241
합계	1,317	합계			1,31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센터 운영 사업²⁾은 온라인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별 오프라인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76억 3,900만원 전액을 자치단체보조금과 출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보조기관은 이 중 36.9%인 2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3,4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1

2) 코드: 일반회계 1032-303

[2018회계연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년센터 운영	0	7,639	7,639	7,639	7,639	2,820	36.9	4,634	185
자치단체보조	0	5,214	5,214	5,214	5,214	1,251	24.0	3,811	152
출연금	0	2,425	2,425	2,425	2,425	1,569	64.7	823	33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신규 개소한 청년센터 8곳 중 일부 센터는 상담실적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청년들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개 청년센터 신설을 계획하였으나, 센터 당 단가를 조절하여 8개 센터를 신설하였다. 이 중 6개 센터는 2018년 8~10월에 개소하였으나, 일부 센터는 개소시기가 지연되어 2018년 12월, 2019년 1월 개소하였다.

해당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내에 청년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공간은 ① 고용상담등 청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취업지원형)과 ② 취·창업, 복지·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지원 및 정책을 제공하는 복합 청년서비스 공간(통합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신설된 8개 센터 중 성남, 수원, 부산북부센터는 취업지원형이며, 그 외 5개 센터는 통합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형에서는 세미나실, 스터디룸 등 공간 대여와 함께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형은 센터에 방문한 청년에게 전담창구 내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담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청년센터의 방문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상담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월평균 방문 건수는 92.3건에서 572.8건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

나, 초기에 방문 건수가 적었던 천안센터, 대구서부센터의 경우에도 2019년 이후 방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센터별 방문 실적]

(단위: 명)

센터	개소	방문										
		'18.9.	10	11	12	'19.1	2	3	4	5	6	평균
인천	'18.8.	348	424	533	561	656	629	609	587	450	481	527.8
성남	'18.9.	90	378	368	402	447	501	650	601	647	686	477.0
수원	'18.10.	-	61	225	287	321	372	346	380	422	367	309.0
부산북부	'18.10.	-	176	265	296	193	151	255	515	363	495	301.0
대구서부	'18.8.	0	23	11	0	13	9	6	521	920	995	249.8
광주	'18.9.	60	291	263	422	423	239	304	299	300	312	291.3
전주	'19.1.	-	-	-	-	-	167	541	817	1,543	1,443	902.2
천안	'18.12.	-	-	-	27	45	16	10	151	212	185	92.3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 센터별 월평균 상담 건수는 12.6건(대구서부센터)에서 314.7건(성남센터)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상담 건수가 적은 센터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센터별 상담 실적]

(단위: 건)

센터	개소	상담										
		'18.9.	10	11	12	'19.1	2	3	4	5	6	평균
인천	'18.8.	0	0	0	0	27	92	113	101	81	85	49.9
성남	'18.9.	90	310	317	294	282	267	225	498	602	262	314.7
수원	'18.10.	-	0	70	114	113	129	141	202	194	176	142.3
부산북부	'18.10.	-	176	184	173	138	96	193	417	281	414	230.2
대구서부	'18.8.	0	0	0	0	5	7	6	17	15	76	12.6
광주	'18.9.	0	58	12	0	25	17	20	43	67	51	29.3
전주	'19.1.	-	-	-	-	-	22	122	374	511	473	300.4
천안	'18.12.	-	-	-	0	29	2	10	140	209	125	85.8

자료: 고용노동부

당초 청년센터 확충의 취지가 청년고용대책의 전달체계로써, 청년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상담 및 취업특강 등 청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청년센터 방문이 단순 공간 활용 외에 상담과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센터 내의 청년센터가 청년대책의 전달체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상담 실적을 관리하고,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산, 통영 청년센터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센터 개소가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센터 운영 사업을 신설하고, 오프라인 센터인 군산, 통영 청년센터의 개소 비용 5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52억 1,4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실집행 단계에서는 교부현액 대비 24.0%인 1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센터별로 보면, 군산센터는 교부현액 26억 700만원 중 7.8%인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영센터는 교부현액 26억 700만원 중 40.2%인 10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다.

[오프라인 청년센터 실집행 내역]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이·전용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5,214	0	5,214	1,252	3,810	152	24.0
군산	경상보조 (330-01)	△1,050	357	4	353	0	1.1
	자본보조 (330-03)	1,050	2,250	200	2,050	0	8.9
	소 계	0	2,607	204	2,403	0	7.8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이·전용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통영	경상보조 (330-01)	1,407	0	1,407	0	1,407	0	0.0
	자본보조 (330-03)	1,200	0	1,200	1,048	0	152	87.3
	소 계	2,607	0	2,607	1,048	1,407	152	40.2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당초 계획 대비 부지확정, 건물 준공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두 센터 모두 당초 목표 대비 6개월 이상 늦어진 상황이다. 군산·통영 청년센터는 2018년 하반기 부지 확정 이후 현재 내부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통영 청년센터 집행 내역]

과정	군산		통영	
	계획	집행	계획	집행
부지확정	'18.7	'18.7	'18.9	'18.11
신축건물 준공	'18.12	'19.5	-	-
매입비 지급	'19.1	'19.5	'18.12	'18.12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주·완료	~'18.12	~'19.1	~'19.3	~'19.3
내부리모델링·위탁기관 모집	~'19.1	~'19.8	~'19.3	~'19.8
기자재 구입	'19.1	'19.8	'19.3	'19.8
개소예정	'19.1	'19.8	'19.상반기	'19.8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후 두 지역의 청년센터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의 참여율 제고 필요 등

가. 현 황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제도 변경 안내 및 추가인원 채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¹⁾ 내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관련 2018년도 예산 208억 8,100만원 중 107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²⁾은 공인노무사, 노사단체 등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도 추경에서는 근로시간특례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2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3억 6,800만원 중 2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용창출 장려금	392,616	549,410	25	0	549,435	476,429	86.7	0	73,006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20,881	20,881	0	0	20,881	10,795	51.7	0	10,086
근로조건 개선지원	10289	12424	0	±815	12424	12231	98.4	0	193
근로조건자율 개선지원	1,808	2,368	0	0	2,368	2,298	97.0	0	70

자료: 고용노동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

2) 코드: 일반회계 3031-302

나. 분석의견

첫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안내 및 기존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근로시간 단축제, 교대제 도입 확대, 일자리순환제)를 통해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이다.

2018년 일자리 함께하기 예산은 208억 8,100만원이었으나 이 중 51.7%인 107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년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지원유형	예산			인원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계획인원(C)	지원인원(D)	비율(D/C)
일자리 함께하기	20,881	10,795	51.7	4,459	5,578	125.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기존 3가지 유형, ①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실 근로시간 단축제 ③ 일자리 순환제에 ④ ‘주 근로시간 단축제’ 유형을 추가하였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증가근로자 인건비 및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개요]

상시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인건비(1인당, 1개월)				임금보전(1인당, 1개월)		
	52시간 적용		조기단축 ¹⁾	노선버스	52시간 적용		조기단축
500인 초과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 까지	60만원, 1년	(없음)		4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60만원/ 이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 2년	
	기타	60만원, 1년	40만원, 2년		기타	40만원, 1년	

상시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인건비(1인당, 1개월)				임금보전(1인당, 1개월)			
	52시간 적용		조기단축 ¹⁾		52시간 적용		조기단축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 까지	80만원, 1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40만원, 2년	40만원, 3년	40만원, 2년
	기타	80만원, 1년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기타	40만원, 1년		

주: 1) 조기단축기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로, 1,598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전체 법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내역 중 조기단축 기업은 5개로, 84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018년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인원이 많지 않고, 지원업종이 노선버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내역]

(단위: 명, 개)

구 분	합계		300인 미만		300-500인		500인 초과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법정근로 시간 단축	1,598	17	952	14	0	0	646	3
노선버스	1,501	14	941	13	0	0	560	1
구 분	합계		300인 미만 제조업 특례제외		300인 미만 기타		300인 이상 특례제외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조기단축 기업	84	5	80	4	4	1	0	0
노선버스	43	1	43	1	0	0	0	0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사업³⁾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자리함께하기 고

용장려금 안내 과정에서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주52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특히 일터혁신컨설팅 등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은 법정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은 공인노무사 또는 해당 업종의 노사단체 등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추경 편성 당시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근로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버스업종 500개소, 도·소매 500개소, 숙박·음식업 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추경예산을 통해 도·소매·숙박업 500개소, 음식점 500개소에 대한 자율준수지원만 수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버스업종은 사업주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2019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개소)

업종	계획		집행		사업수행자	
	예산액	사업장	집행액	사업장		
본예산	기초고용질서	989	6,000	939	5,939	
	병원업종	200	50	200	50	한국공인노무사회
	소규모도소매	200	600	191	600	소상공인연합회
	음식숙박업					
추경 (특례 제외)	사업주교육	300	5,000	300	5,000	
	버스	86.5	500	-	-	
	도·소매	86.5	500	150	500	한국공인노무사회
	숙박업	86.5	500			
	음식업			150	500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료: 고용노동부

3)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8-350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당초 목표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에도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취약업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¹⁾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 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98억 5,000만원 중 99.6%인 29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적기업 육성	29,850	29,850	0	0	29,850	29,745	99.6	0	105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사회적기업 성과공유대회는 지방자치단체 격려금 지급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 집행되었으나, 향후 격려금을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편성된 예산 내에서 행사를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사회적기업 성과공유대회를 신규로 개최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

동 예산으로 2018년 7월 6일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우수한 29개 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6명의 자치단체 공무원을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7-301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액 8,000만원 대비 157.5%인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세목 변경을 통해 우수기관에 지급한 7,000만원의 격려금이다.

[2018년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목	세부내용	집행액
210-01(일반수용비)	행사운영경비(트로피 제작)	9,820
	행사 기념품 구입	9,240
	행사 운영경비(사회자)	2,000
	행사 운영경비(공연 등)	2,000
210-07(임차료)	행사장소 임차료	3,178
210-14(일반용역비)	행사 지원(행사 운영)	19,500
	행사 지원(무대 설치 등)	9,961
210-16(기타운영비)	우수기관 격려금 지급	70,000
합 계		125,6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1,900만원, 일반용역비 5,100만원을 기타 운영비(210-16목)로 세목조정하여 우수기관 격려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성과금,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타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모두 포상금(310-03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공유대회의 우수기관 격려금도 기타운영비가 아닌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²⁾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우수기관 격려금을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규 행사 집행 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여 과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의 다른 세부사업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법적 근거 하에 ‘포상금(310-03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일반회계, 2032-305)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억원의 포상금을 15개 지자체에 지급하였다.

가. 현황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¹⁾은 참여 대학생 중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이 50% 이상인 ‘인문계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으로,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참여기업·대학과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45억 7,900만원 중 99.8%인 24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문특화청년 취업아카데미	24,579	24,579	0	0	24,579	24,526	99.8	0	53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까지는 인문계 특화과정과 일반과정(계열 무관)이 함께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유형별 내용]

구분	대상	과정 내용	개설요건	연수시간
단기 과정	재학생으로, (4년제) 2~3학년, (2·3년제) 1학년 2학기 이상	- NCS 직업기초 및 기초 직무훈련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이	200시간 이내
장기 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 NCS 기반 교육훈련, 직무심화 및 실무	정원의 50% 이상 참여의무	600시간 내외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명: 일반회계 1051-300

구분	대상	과정 내용	개설요건	연수시간
창직 과정	대학 재학생	- 문화·예술·콘텐츠분야 등의 창조적 활동 프로젝트 방식 운영	-	200~ 600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들의 협약기업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업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 선정 등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협약기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¹⁾ 협약기업은 연수과정 수료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채용) 우대 의사를 가진 기업으로, 운영과정 설계 및 현장실습서로 참여하여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협약기업 취업률은 장기과정 8.4%, 창직과정 1.8%로 낮은 수준이다.²⁾ 국회에서는 2017년 결산 심사 당시 ‘협약기업 취업률이 부진한 원인을 검토하고 협약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협약기업의 채용예상인원의 합이 신청연수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과정개발 참여, 현장강사 비율 확대, 현장실습처로의 활용 등 협약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이다.

1) 2018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는 사업 신청 전 10개 이상 협약기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 2018년 진행된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의 취업률은 집계되지 않아 2017년 취업률을 사용하였다.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참여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취업 인원 (c)	협약기업 취업인원 (d)	취업률 (c/b)	협약기업 취업률 (d/b)	
								2016
	장기	1,771	1,257	71.0	724	71	57.6	5.6
	단기	2,343	1,776	75.8	-	-	-	-
	창직	897	864	96.3	256	2	51.2	0.4
2017	장기	4,091	2,783	68.0	1,587	233	57.0	8.4
	단기	5,167	3,924	75.9	-	-	-	-
	창직	770	658	87.0	187	6	55.8	1.8
2018	장기	3,375	2,447	72.5	-	-	-	-
	단기	3,575	2,808	78.5	-	-	-	-
	창직	1,003	917	91.4	-	-	-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협약기업이 수료자를 채용할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예상인원을 늘리는 방안 외에도 협약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내실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운영기관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기업 및 사업주 주도형이 민간우수훈련기관, 대학주도형 과정의 취업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주도형, 사업주 주도형이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비해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별 취업률 현황]

(단위: %)

구분	기업주도형	사업주단체형	대학주도형	민간우수훈련기관
2015	57.7	60.9	41.0	68.9
2016	61.3	60.7	52.1	54.2
2017	66.5	62.2	54.1	60.1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협약기업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사업¹⁾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7억 6,1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1,869	1,869	0	0	1,869	1,680	89.9	0	189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	761	761	0	0	761	575	75.6	0	186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신규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역량 확보 및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²⁾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상담실로, 정부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1-300의 내역사업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 부담이 적은 민간단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21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기존 상담 서비스에 더해 ‘사업장 교육’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사업장 교육은 고용평등상담실 전문상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불안 등을 심리상담사가 무료로 상담 및 치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도 선정된 고용평등상담실 21개소 중 신규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1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신규사업 참여 인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교육은 전체 11회가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4명, 11명 등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대부분 하반기에만 이루어졌으며, 전체 참여 연인원이 101명이다.

[2018년도 신규 사업 추진 실적]

(단위: 회, 명)

연번	고용평등상담실	집행액	사업장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회차	일시	인원	기간	횟수	인원
1	서울여성노동자회	45	0	-	0	7월~12월	147	52
2	한국여성민우회	22	0	-	0	9월~12월	6	2
3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34	1	11월	11	10월~12월	90	12
4	인천여성노동자회	24	1	5월	80	7월~12월	8	5
5	부천여성노동자회	23	1	5월	80	-	-	-
6	수원여성노동자회	22	-	-	-	-	-	-
7	안산여성노동자회	23	-	-	-	-	-	-
8	부산여성회	23	-	-	-	-	-	-
9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23	-	-	-	-	-	-
10	대구여성회	29	1	5월	94	4월~12월	50	23
11	대구여성노동자회	23	-	-	-	-	-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위: 회, 명)

연번	고용평등상담실	집행액	사업장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회차	일시	인원	기간	횟수	인원
12	광주여성노동자회	26	0	-	0	10월~12월	20	5
13	전북여성노동자회	24	0	-	0	11월~12월	10	2
14	한국노총 충청북도지역본부	25	-	-	-	-	-	-
15	대전여민회	22	-	-	-	-	-	-
16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	22	2	5월, 11월	84	-	-	-
17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20	-	-	-	-	-	-
18	경주여성노동자회	21	1	11월	4	-	-	-
19	한국노총 광양지부	23	4	5월, 9월~11월	139	-	-	-
20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21	-	-	-	-	-	-
21	제주여민회	21	-	-	-	-	-	-
총 21개소		516	11	-	492	-	331	101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7억 6,1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을 교부하고 1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사업시행주체인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액(7억 6,100만원) 중 실제 집행률은 67.8%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고용평등상담실 21개소)				
본예산	추경(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761	761	575	186	575	575	516	59	67.8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고용평등상담실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를 매년 12월

말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³⁾ 그러나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했음에도, 사전에 사업에 필요한 신규 인력 여부 등 구체적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민간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신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보조사업자의 집행 역량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신규 사업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5조(민간단체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종료일 부터 3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재공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비용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에도 구직자 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과 재직자 대상 고속련·신기술분야 훈련 사업을 편성하였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¹⁾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고급훈련을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5,911억 800만원 중 5,90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으나, 고급훈련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 42억 9,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	435,108	591,108	0	0	591,108	590,388	99.9	0	720
고급훈련	4,297	4,297	0	0	4,297	0	0.0	0	-

주: 고급훈련 미집행 금액은 타 내역사업인 '직무훈련'으로 전액 집행

자료: 고용노동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²⁾은 고용보험 가입인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7,040억 4,100만원 중 7,03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0만원을 이월하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145-350

2) 코드: 고용보험기금 1146-350

동 사업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 관련 직업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그 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내역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525,264	704,041	0	0	704,041	703,848	100.0	97	96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36,783	473,464	0	0	465,664	465,616	100.0	0	47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신기술·고속련 훈련인 고급훈련은 수요 부족으로 훈련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내 신규 사업으로 고급훈련 지원을 편성하였다. 사업주 훈련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급훈련 사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한해 기존 재직자를 계속 고용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교육시키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배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은 당초 26,860명의 훈련 지원을 목표로 4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하반기 4개 과정을 선정하였으나, 훈련기관 역량 부족 및 훈련생 적응 부족, 훈련 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6수준³⁾ 이상으로 높게 잡아 훈련 수요가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총 8단계의 수준체계에 따라 지식기술, 역량, 경력 등을 평정하여 제시하며, NCS 6 단계는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기술·고속련 훈련 선정 내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머신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실무프로젝트
한국IT교육원	머신러닝/V2X/컴퓨터비전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SW개발
더조은컴퓨터학원	머신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실무프로젝트
더조은IT아카데미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실무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본예산에는 33,333명의 훈련지원을 목표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하반기 과정 선정 시부터는 NCS 5 수준으로 훈련수준을 조정하여 수요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훈련 수준 조정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관련 직종 훈련과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기술·고속련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재직자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력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사업 중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은 관련 직종 취업률 등 훈련 과정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은 2017년부터 도입된 훈련과정으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에 대해 신기술·고속련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훈련기간은 3개월~10개월로, NCS 5수준 이상의 고급수준 훈련을 포함하여야 하며, 훈련생에게는 최대 월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의 목표인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1,000명, 2019년 1,3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훈련인원도 2017년 851명, 2018년 9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훈련 인원]

(단위: 명)

구분	유형	2017		2018		201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일반실업자	75,725	67,443	73,490	61,366	66,000
	일반고특화	2,700	3,156	3,800	3,345	3,800
	4차산업혁명	400	851	1,000	921	1,300
	합 계	78,825	71,450	79,790	65,632	71,100

자료: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과정의 훈련 성과는 2017년 상반기에 진행된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상반기 과정은 총 24개 과정으로, 전체 수료율은 79.7%이나 5개 과정은 50~60%대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취업률은 69.8%이나 인공지능 에이전트 과정 등 4개 과정은 취업률은 6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과정 중 수료율 및 취업률이 낮은 정 예시]

(단위: 명, %)

훈련과정	훈련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취업인원 (C)	취업률 (C/B)
임베디드 SW 기반 IoT 고급 개발자 양성	24	15	62.5	10	66.7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전문가과정	20	12	60.0	11	91.7
인공지능 에이전트 과정	30	20	66.7	7	35.0
스마트제조 공정 최적화 및 공정 전문가 양성	24	14	58.3	10	71.4
4차 산업혁명 준비 IoT 통합 전문가 양성	24	13	54.2	9	69.2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	26	22	84.6	12	54.6
의료기기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19	19	100.0	10	52.6
임베디드 IoT 융합 스마트 플랫폼 개발자 양성	20	16	80.0	9	56.3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연도별로 일부 과정의 경우 중도에 사업 포기를 하는 등 선정 이후 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도 사업 포기 훈련 과정 사례]

연도	훈련과정
17상반기 (24개)	2개(임베디드 로보틱스, 스마트제조 PLM구축전문가 양성)
17하반기 (19개)	5개(ICT 융합 지능로봇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 핀테크 서비스와 디지털 금융 보안, 융복합 생명과학 실무과정, 3D프린터 기반 패션 디자인과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과정)
18하반기 (20개)	2개(IoT 활용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

자료: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과정은 지속적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훈련과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종료 이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수수료 및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훈련 과정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를 교육훈련하고 있으므로, 단순 취업률이 아닌 수료한 훈련과 관련 있는 직종으로 취업하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무·직종 간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관련 직종 취업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정 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과정의 경우, 타 훈련 과정에 비해 훈련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직종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의 관련직종 취업률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¹⁾은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451억 2,500만원 중 1,19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4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장어린이집 지원	145,125	145,125	0	0	145,125	119,365	82.2	6,304	19,456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49,829	49,829	0	0	49,829	36,125	72.5	0	13,704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16,268	16,268	0	0	16,268	5,278	32.4	6,304	4,686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임의 설치 사업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직장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1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전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설치비용 중 60~90%를 3~4억원(공동 6~8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5,0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재 교구비 사용액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개요]

구분	지원한도	비고
시설전환비	대규모기업군 : 3억원(공동 6억원)	소요금액의 60%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 4억원(공동 8억원)	소요금액의 90%, 한도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 20억원	
교재 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기업 7천만원)	교체: 3년마다 3천만원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시설전환비의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목표(153개소) 대비 65.9%인 89개소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여 2015년 100.0%에서 2018년 72.9%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2017년 결산 심사 당시 ‘직장어린이집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과 ‘설치현황 자료를 기초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합리적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

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목표 사업장	지원사업장	달성률
2015	25,069	25,073	100.0	110	88	80.0
2016	39,025	32,547	83.4	156	114	73.1
2017	43,432	35,847	82.5	131	118	90.1
2018	44,758	32,629	72.9	135	89	65.9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집행률 감소 추세는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의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어,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의무설치사업장은 1,389개소로, 미이행사업장은 137개로, 9.9%이다. 한편, 임의설치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이행사업장			미이행사업장		설치 의무사업장 합계(a+b)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시설 위탁	소계(a)	개소(b)	비중	
2015	578	27	605	538	47.1	1,143
2016	729	211	940	213	18.5	1,153
2017	839	247	1,086	167	13.3	1,253
2018	957	295	1,252	137	9.9	1,389

주: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의 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자체협업형, 대중소기업상생형,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대다수의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상황으로,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의 임의설치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시 임의설치대상사업장의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 이후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는 2018년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소를 설치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 사업은 예산액 162억 6,800만원 중 32.4%인 52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3억 400만원이 이월되고, 46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16,268	16,268	0	0	16,268	5,278	32.4	6,304	4,686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에 편성된 3개소 중 2개소는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2018년 설치 지원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구 분	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종류	시설전환<전환> - 민간 어린이집 매입	시설건립<신축> - 부지매입	시설건립<신축> - 부지매입
규모	지상2층	지상3층	지상2층
정원	114명	180명	130명
지역	강서구 강서로	시흥시 조남동	계룡 대실지구
기간	'18.7월~'18.12월	'18.7월~'20.3월	'18.7월~'20.3월
예산	총 5,605백만원 (정부 4,484, 자치단체 1,121)	총 5,400백만원 (정부 4,320, 자치단체 1,080)	총 5,078백만원 (정부 4,062, 자치단체 1,064)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반영되었으나,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한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도 동 사업을 통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설치비는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식(지자체 부담 20%)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영비는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바가 없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이후 원활히 운영되고, 적절한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공 어린이집 관련 재원 및 개요]

구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재원 (*19 예산)	고용보험기금 (280억원, 설치비)	고용보험기금 (72억원, 운영비)	고용보험기금 (1,275억원, 설치·운영비)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해당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中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자녀 우선 입소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위치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	근로여성 밀집지역 (거주지, 산단 인근 등)	주로 직장 內
개수	'19년 10개소('18년 3개소)	24개소('96~'03)	1,111개소('18.12월)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운영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산재보험급여 사업¹⁾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5조 346억 7,800만원 중 5조 33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산재보험급여	5,034,678	5,034,678	0	±124,656	5,034,678	5,033,901	99.9	0	777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당초 계획 대비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가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포함되었다²⁾.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51-35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으나,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졌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출퇴근재해 신청 수요 산출 시 자동차사고 59,812명, 자동차 이외의 사고 23,784명으로 총 83,596건³⁾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출퇴근재해 신청 건수는 6,924건으로 당초 예상(83,596건) 대비 8.3%에 불과하다.

[2018년 출퇴근 재해 신청 및 처리 건수]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검토중
		소계	승인	불승인	반려	
기존 ¹⁾	306	275	110	138	27	31
출퇴근재해	6,618	5,847	5,166	322	359	771
합 계	6,924	6,122	5,276	460	386	802

주: 1) 기존은 법 개정 이전의 출퇴근재해(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을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산업재해 신청 및 심사·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도 예산 편성 당시 통상의 경로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590명의 신규증원인력 인건비(211억 6,600만원)⁴⁾, 임차료 등 행정소요비용(119억 9,900만원)⁵⁾을 반영하였다. 출퇴근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대비 감소했으나, 관련 인건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행정소요비용은 98.8%인 118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증원 인력 590명 중 출퇴근 재해에 따른 전담조사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소규모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업무상 질병 현장 조사 강화 등 출퇴근 재해와 연관된 사업에 투입하였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는 산재 보상이 아닌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상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보상범위가 적고, 고용관계에 있는 사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원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내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084-104) 사업에 편성되었다.

5)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4051-351)의 내역사업인 출퇴근재해 보호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업주에 대한 부담감으로 산재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여 대물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추가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선호가 클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 외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신청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건수를 추계하고, 산재보상 신청 간소화, 관련 보상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산재보상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대상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 중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대상금액은 97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하였다. 이는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재해가 포함되면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 건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수액은 247억 4,000만원으로, 회수율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권 회수율은 구상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4.4%에서 2018년 2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회수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권 회수율]

(단위: 백만원, %)

수납 연도	전체			자동차 사고		
	구상대상 금액(A)	회수액(B)	회수율 (B/A)	구상대상 금액(A)	회수액(B)	회수율 (B/A)
2016	179,480	39,579	22.1	70,470	24,236	34.4
2017	155,893	37,074	23.8	79,726	22,842	28.7
2018	154,945	37,044	23.9	97,153	24,740	25.5

자료: 고용노동부

향후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대상금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상금 회수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¹⁾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개선 및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490억 2,600만원 중 37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불용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내역사업의 집행 부진(집행률 72.8%)이다.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유해작업 환경개선	49,026	49,026	0	0	49,026	37,897	77.3	0	11,129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비용지원	40,051	40,051	0	0	40,051	29,177	72.8	0	10,874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소속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체에 해로운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3-350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²⁾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소속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³⁾ 동 사업은 2016년부터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인 미만 사업장 전수(목표 사업장 5만개, 지원인원 35만명)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2018년도 집행 결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40,024개로, 당초 목표(50,000개소) 대비 80.1%이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8만명으로, 당초 목표(35만명) 대비 51.4%로 나타났다.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개소, 명, %)

지원유형	예산			인원		
	예산	집행액	집행률	계획 인원	지원 인원	집행률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8,483	14,636	79.2	50,000	40,024	80.1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20,688	13,734	66.4	350,000	179,940	51.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신규 측정사업장(과거 3년 동안 미 실시)은 1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측정 사업장은 40만원 한도 내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진단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각각 지원 신청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청 상의 불편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6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의 부과 개소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전체 위반 사업장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장수	부과금액	사업장수	부과금액	사업장수	부과금액	사업장수	부과금액
5인 미만	107	18,910	193	38,596	135	30,748	81	32,839
5~9인	156	35,066	323	71,430	119	37,148	94	36,804
10~19인	145	51,776	285	96,376	108	43,020	77	58,144
20~49인	169	82,236	269	110,855	109	106,026	117	141,728
50~99인	43	26,576	91	72,741	58	59,504	50	71,258
100~299인	48	66,434	82	76,134	84	194,428	63	119,112
300~999인	23	20,720	33	70,360	26	59,856	30	117,520
1000인이상	9	27,366	12	52,918	18	92,424	18	186,160
합계	700	329,084	1,288	589,410	657	623,154	530	763,56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보호의 기초적인 제도로, 비용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비용지원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방안은 취약계층지원·공공서비스 제고와 관련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5.9만개를 제공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를 안전·재해예방 등 긴급한 공공수요가 있거나 행정정보·실태조사 등 공공서비스 관련 일자리 중심으로,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3개 사업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3개 사업의 변경액은 총 23억 800만원이다.

[연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350-02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365	맞춤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연금수급자 실태조사 사업예산 365백만원 기금변경
자체변경	350-02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1,383	맞춤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험가입확대 등을 위한 가입·홍보 사업예산 1,383백만원 기금변경
자체변경	350-02	업종별 재해예방	560	맞춤형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예산 560백만원 기금변경
합 계			2,308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에 없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으나, 연말 집행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3개 사업에서 단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증식보조비 등 수당을 포함하여 8,995원~9,763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근로기간은 12월달, 1개월이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명,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채용 인원	시간당 임금	계약기간
업종별 재해예방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560	532	160	8,995	(당초) '18.3.20~'18.11.07 (연장)~12.18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부정수급관리	365	297	150	9,763	'18.11.26~ '18.12.21.
산재보험적용 부과지원	산재근로자 가입정보관리	1,383	997	570	9,763	'18.11.26~ '18.12.21.

자료: 고용노동부

각 사업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①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5세 이상 건설업 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선발하여 2인 1조로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을 순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의 근로기간을 12월로 1개월 연장하였다. ②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에서는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인력 150명을 선발하여, 4주간 조사대상 8,46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¹⁾ ③ 산재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에서는 소규모사업장 가입홍보 등을 진행하는 인력을 채용하였다.

1) 전체 조사대상의 71.7%인 6,06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25건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인력 업무내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업무내용
업종별 재해예방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2인 1조로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현장 순찰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부정수급관리	산재보험 연금수급권자 실태조사(방문, 전화)
산재보험적용 부과지원	산재근로자 가입정보관리	소규모사업장 산재 가입 홍보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1개월 단기 일자리로 지속성이 없으며, 일부는 상시적인 업무 수행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연말 집행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권자 실태조사, 소규모사업장 가입홍보 등의 업무는 연말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단의 상시적인 업무와 연결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상시적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규인원 채용비용, 교육 등에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적 업무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 인력 등을 요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에 없는 내역을 연말에 계획변경을 통해 진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¹⁾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34억 9,000만원 중 2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퇴직연금사업 운영	3,490	3,490	0	0	3,490	2,911	83.4	0	579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재정지원금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용자부담금의 10% 및 운영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을 확대하여, 5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어예원 예산분석관(boni821@assembly.go.kr, 788-4633)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액 불용되었다.

이와 같은 불용은 2015년 이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2017년을 제외하고 지속되어 온 상황으로, 2019년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²⁾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예산 반영 및 불용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	불용 사유
2015	500,000	0	500,000	관련법 개정 지연
2016	958,000	0	958,000	관련법 개정 지연
2017	0	0	0	-
2018	578,000	0	578,000	관련법 개정 지연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으므로, 수익률 체고 등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는 은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이 참여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0.8%, 2017년 1.0%, 2018년 1.2%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16.9.19. 한정에 의원 대표발의, 2017.6.2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6.11.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6	73.3	49.8	36.0	24.5	26.6	18.1	9.9	6.8	1.2	0.8	147.0	100.0
2017	84.3	50.0	39.6	23.5	32.1	19.1	10.8	6.4	1.7	1.0	168.4	100.0
2018	96.4	50.7	43.2	22.7	36.7	19.3	11.6	6.1	2.1	1.2	19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수(누계)는 2014년 3만 9,141개에서 2018년 8만 1,791개소로 연평균 20.2% 증가하였고, 해지 사업장 수(누계)는 2014년 4,795개소에서 2018년 9,814개소로 연평균 19.6% 증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누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가입	39,141	48,680	58,668	70,611	81,791	20.2
해지	4,795	5,813	5,575	7,523	9,814	19.6
유지	34,346	42,867	53,093	63,088	71,977	20.3

자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3중 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2%인 반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9%로, 여전히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15			2016			2017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도입률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도입률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도입률
계	1,144,609	299,833	26.2	1,203,784	323,864	26.9	1,259,585	343,134	27.2
30인 이하	1,062,997	239,872	22.6	1,121,978	262,300	23.4	1,177,993	281,234	23.9
30인~100인	61,566	43,157	70.1	62,029	44,683	72.0	61,813	45,047	72.9
100~299인	15,050	12,300	81.7	15,050	12,300	81.7	15,050	12,300	81.7
300인 이상	4,996	4,504	90.2	4,996	4,504	90.2	4,996	4,504	90.2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통계

다만, 현행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은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써 역할이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운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수익률이 중요한데, 2018년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5년 환산 수익률은 1.93%로, 국민연금 5년 평균 수익률(3.97%) 대비 2.04%p 낮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분리해보면, 실적배당형의 5년 평균 수익률이 0.82%로 전체수익률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리금 보장형은 1.94%이나 2018년말 예금금리(1.99%) 보다 낮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단위: %)

	2018년		5년('14~'18년)	
	전체 수익률	근로복지공단	전체 수익률	근로복지공단
원리금보장형	1.56	1.70	1.94	1.94
실적배당형	△3.82	△7.59	1.48	0.82
전체	1.01	1.58	1.88	1.93

주: 원리금 보장형은 적격 금융기관 또는 국공채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2억 1,900만원이며, 20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9.9%인 61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143억 3,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219	9,219	9,219	20,441	6,107	14,332	1	29.9

자료: 기상청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60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3,847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13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9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97,899	397,899	406,055	384,728	11,339	9,988	94.7

자료: 기상청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7,725억 1,300만원, 부채는 381억 9,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343억 1,7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8억 700만원(0.5%)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67억 1,800만원, 일반유형자산 7,062억 5,500만원, 무형자산 423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밀양, 충주과학관 건립 등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78억 9,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49억 4,800만원(28.1%)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209억 7,200만원, 장기차입부채 157억 8,800만원, 장기충당부채 14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차세대 통합 기상 IT 인프라(COMIS-4) 2차년도 구축사업 등 금융리스부채 158억 5,700만원 감소, 퇴직급여충당부채 8억 3,2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772,513	768,706	3,807	0.5
Ⅰ. 유동자산	16,718	15,260	1,458	9.6
Ⅱ. 투자자산	0	0	0	0.0
Ⅲ. 일반유형자산	706,255	698,283	7,972	1.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2,380	48,343	△5,963	△12.3
Ⅵ. 기타비유동자산	7,160	6,820	340	5.0
부 채	38,196	53,144	△14,948	△28.1
Ⅰ. 유동부채	20,972	24,796	△3,824	△15.4
Ⅱ. 장기차입부채	15,788	27,802	△12,014	△43.2
Ⅲ. 장기충당부채	1,435	547	888	162.3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734,317	715,561	18,756	2.6
Ⅰ. 기초순자산	715,561	702,408	13,153	1.9
Ⅱ. 재정운영결과	387,079	389,709	△2,630	△0.7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397,611	404,373	△6,762	△1.7
Ⅳ. 조정항목	8,224	△1,510	0	0.0
Ⅴ. 기말순자산	734,317	715,561	18,756	2.6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870억 7,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2,755억 400만원, 관리운영비 1,236억 1,500만원, 비배분비용 5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126억 1,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6억 3,000만원(0.7%) 감소한 3,870억 7,900만원이며, 이는 전기오류수정 손실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14억 8,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연구프로그램(995억 5,300만원)과 기상관측프로그램(742억 5,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13억 9,800만원과 경비 422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 5억 7,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275,504	269,241	6,263	2.3
II. 관리운영비	123,615	130,147	△6,532	△5.0
III. 비배분비용	579	2,064	△1,485	△71.9
IV. 비배분수익	12,619	11,743	876	7.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87,079	389,709	△2,630	△0.7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87,079	389,709	△2,630	△0.7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7,155억 6,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343억 1,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87억 5,600만원(2.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세입액인 국고이전지출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채원의 조달 4,066억 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89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82억 2,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715,561	702,408	13,153	1.9
II. 재정운영결과	387,079	389,709	△2,630	△0.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97,611	404,373	△6,762	△1.7
IV. 조정항목	8,224	△1,510	9,734	644.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34,317	715,561	18,756	2.6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② 연직바람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이 있다.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은 기관목적에 맞지 않는 ODA 성격의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9억 1,500만원이 감액(91억 4,400만원 → 82억 2,900만원)되었고, 연직바람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7년 계약지연에 따른 실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5억원이 감액(10억 5,700만원 → 5억 5,7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 사업, ②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 ③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다.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사업은 제48차 IPCC 총회 개최를 위하여 5억 5,000만원이 증액(8억 7,600만원 → 14억 2,600만원)되었고, 한반도 지하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은 수도권 지진활동·지하단층 분석 및 지하구조 연구를 위하여 12억 5,000만원이 증액(15억 → 27억 5,000만원)되었고,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서해안기상기후센터 설계비 등 5억원(172억 1,900만원 → 17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다.²⁾

1)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2)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기상청은 ① 폭염, 가뭄 등 위험기상 및 관측인프라 분야의 지속적 투자, ② 지진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지진관측망 확충 및 지진정보 통보시간 단축, ③ 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 충족 및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기상산업 성장지원, ④ ICT 기반 확충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기상청은 '18년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국내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 측의 소송 제기로 '19년 6월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는 특정집단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기상청은 항공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항공기상정보제공에 소요되는 국가재정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기관 자체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다소 과도한 수준('18년 65.6%)이므로, 기상청은 시험연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타 목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된바, 시험연구와 연관성이 낮은 경비에 지출하는 집행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상청은 2018년도에 11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8건의 계약에서 7억 8,4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예산 외에 일부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정보화사업 예산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의 위약금 징수 철저 필요

가. 현황

기상청은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등 27건의 위약금¹⁾에 대하여 총 143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400만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143억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18회계연도 위약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위약금	217	217	217	14,399	74	14,325	0	0.5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	-	-	-	14,317	0	14,317	0	0.0

주: '18년 예산안 심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이 최종 확정('17.11.23.)되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19년 예산편성 시 지체상금을 반영하였음.

자료: 기상청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 지체상금 177억 2,107만원 중 34억 432만원은 대금지급시 상계처리를 통해 수납처리하였으나, 잔여 금액 143억 1,675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계약상대자인 대주ENT(주)에서 '18년 4월 9일 소송을 제기하여 '19년 6월 현재 지체상금 부과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분석의견

장기간 동안 도입이 지연되었던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의 지체상금의 수납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57-572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추진계획」(2011년)에 따라 2013년 대주ENT(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1월 도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계약대상자가 기상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항공기와 탑재 기상장비를 일방적으로 국내로 반입('15.10.29)하는 등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미국으로 반송하였고, 항공기 개조회사 추가 섭외 및 재개조 추진('16.1.27), 미연방항공청(FAA) 비행인증시험 절차 진행('16.12.10) 등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이후 201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국내 이송 후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및 항공기 등록이 완료되고, 2017년 말 항공기 인수검사 완료 및 초도비행 실시 후 2018년 1월에 첫 관측비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17년 11월 이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지체상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계약대상자가 지체상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 관련 진행상황]

- 본 사업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15.11.7부터 계속 부과하고, 지체상금의 한도는 없으며, 총 계약금액의 0.15%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됨(지체상금은 약 177억원)
 ※ 지체상금 = 총 제조부기금액(\$14,499,269) × 지체율(0.15%) × 지체일수(733)
- 지체상금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계약상대자가 법원에 소장 제출('18.4.9)
 - 소송수행자 지정 및 TF 구성·운영('18.5.9)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 화우] 선임 계약('18.6.14)
 ※ 착수금: 30백만원, 성공보수: 착수금×승소비율
 - 법무부장관(서울고검) 소송대리인 위임장 수령('18.7.3)
 - 서울중앙지법 1차 변론기일('18.8.31) 통지('18.7.16)
 - 답변서 작성('18.8.24) 및 1차 변론('18.12.12)
 - 2차 변론('19.3.13)
 - 고등검찰청 반소제기 승인 지휘('19.3.18) 결정에 따라 반소 제기
 ※ 나머지 지체상금(약 143억원) 수납을 위한 반소 제기 추진('19.3.21)
 - 3차 변론('19.4.17)
 - 4차 변론('19.7.17)
 - 5차 변론기일: '19.9.18(수)

자료: 기상청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등 계절별 위험 기상을 관측하고, 에어로졸, 대기질 등 대기 중 환경기상을 감시하며,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기후변화 감시, 인공증우·증설 등 기상조절실험 기술 향상 및 예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은, 단기적으로는 항공기 도입 및 관리비용 등 예산집행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기상 감시, 대기에 관한 입체적 관측을 통한 관측공백지역 최소화 등을 통한 장기적 편익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지체상금 수납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환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약금 및 지체상금의 발생은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에 대한 기상청의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였고, 업체의 계약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대형항공기 도입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립하고 계약업체 검증·선정을 비롯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청은 기상업무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수수료, 공채 응시료·정보공개 수수료 및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면허 및 수수료¹⁾로 징수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8년도 예산현액 52억 3,800만원 중 29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7년 29억 600만원 대비 2018년 예산현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원가 대비 50% 인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2018회계연도 면허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면허 및 수수료	5,238	5,238	5,238	2,903	2,902	0	1	99.97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4,593	4,593	4,593	2,166	2,165	0	1	99.95
기상정보제공수수료	112	112	112	154	154	0	0	100.0
측기검정수수료	500	500	500	581	581	0	0	100.0
전자민원발급수수료	20	20	20	0	0	0	0	-
공채응시료 등	13	13	13	2	2	0	0	100.0

자료: 기상청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65-651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항공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기상정보의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면허 및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기상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²⁾에 근거하여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로, 징수된 사용료는 전액 국고 반납 조치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³⁾

기상청은 생산원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대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학계·항공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⁴⁾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18년 6월부로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착륙은 11,400원, 영공통과는 4,820원을 부과하고 있다.

2) 「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실제 수수료 징수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여 항공사로부터 매월 징수하고 있다.

4) 기상청은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6년 11월부터 '18년 2월까지 항공업계, 항공협회,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체 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고시 변경 현황]

(단위: 원)

구 분	2005. 5.30. (최초 결정액)	2010. 4.19. (1차 인상)	2014. 2.21. (2차 인상)	2018. 6. 1. (3차 인상)
국제선 착륙	4,850	5,820	6,170	11,400
영공통과	1,650	1,980	2,210	4,820

자료: 기상청

하지만 대한항공 등 8개 국내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18년 6월 26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의 기상청 승소 판결('19.5.10) 이후 원고 측의 항소 제기('19.6.12)로 '19년 6월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주요 국가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국 가 명	편당 사용료	출처
호주	착륙시 128,000원/편	한국항공협회
독일	착륙시 44,000원/편 * 항행시설사용료내 내역 표시	
말레이시아	착륙시 87,000원/편 * 항행시설사용료내 내역 표시	
우즈베키스탄	착륙시 71,000원/편	
유럽31개국 (평균)	35,586원(€27/편)	Report on Aeronautical Met Costs (2004, 유로컨트롤)
오스트리아	106,758원(€81/편)	
불가리아	64,582원(€49/편)	
이탈리아	48,766원(€37/편)	
아일랜드	44,812원(€34/편)	
핀란드	39,540원(€30/편)	
슬로베니아	39,540원(€30/편)	
프랑스	38,222원(€29/편)	
네덜란드	36,904원(€28/편)	
영국	28,996원(€22/편)	
중국	착륙시 64,080원(국내선 약 \$60/편) 192,240원(국제선 약 \$180/편)	중국 기상청 (2006)
대한민국	착륙시 11,400원/편 영공통과시 4,820원/편	기상청

주: 환율은 2018년 4월 18일 기준(1€(유로): 1,318원, 1\$: 1,068원)

자료: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인상율이 착륙은 약 85%, 영공통과는 약 118% 정도로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정보의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2014~2017년까지 평균 약 7.5% 수준이었으며, 2018년의 경우 6월 1일부터 인상된 사용료가 부과되어 일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부담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착륙료 ¹⁾	영공통과료 (외국항공사)	합 계(A)	생산원가 ²⁾ (B)	원가 대비 회수율 (A/B)
2014	1,118	87	1,205	15,515	7.8
2015	1,200	100	1,300	18,956	6.9
2016	1,349	102	1,451	18,956	7.7
2017	1,337	98	1,435	18,956	7.6
2018	2,125	161	2,286	18,956	12.1

주: 1)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비용 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착륙료 합계

2) 생산원가는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2012, 2015)' 기준

자료: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아닌 국내 및 국제항공사 등 특정집단에 게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인 항공사로부터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항공기상정보제공에 소요되는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항공사와 운영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수료와 생산원가 간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업계와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원가 산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기상청은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사업을 기상청 본부, 국가기상위성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기상레이더센터 등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연구비(210-13)를 편성하고 있으며, 2018년 시험연구비 예산 134억 6,700만원과 이·전용 등 예산변동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억 2,500만원 중 11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시험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험연구비						
	예산액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이·전용	세목 조정				
시험연구비 합계	13,467	△300	△442	12,725	11,810	-	915
국가태풍센터 운영	117		△41	76	72		4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21			21	10		11
수치예보·지진업무지원 및 활용연구(R&D)	3,085	△300	△100	2,685	2,288		397
범부처 융합 이중편파레이더 활용 기술개발(R&D)	2,212		△15	2,197	2,123		7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R&D)	234			234	234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개발(R&D)	501		△105	396	304		92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개발(R&D)	88			88	85		3
기상위성자료현업지원 기술개발(R&D)	771		△46	725	485		24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사업(기상청)(R&D)	93			93	92		1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연구(R&D)	6,345		△135	6,210	6,117		93

자료: 기상청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란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9개 경비¹⁾를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시험연구비 단일 비목으로 통합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비목간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통성 있게 집행하고 시험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험연구비 편성의 취지와는 달리, 기상청은 시험연구비를 바탕으로 자체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 위탁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시험연구비목의 포괄성과 신축성을 활용하여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기관의 자체연구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본부,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등에 편성된 기상청의 시험연구비(210-13목)와 연구개발비(260목)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자체연구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 예산에 비해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예산의 비중이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청의 외부 연구용역 비중은 꾸준히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65.6%로 나타나 자체연구보다는 외부 연구용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외부 용역비의 비중이 외부 용역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시험연구비는 위와 같은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외부

1) 시험연구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일용임금(110-04),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피복비(210-03),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시설장비유지비(210-09), 재료비(210-11), 여비(220목) 등 9개 경비로 제한되어 있다.

2)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에 따라 시험연구비 내 연구개발비, 상용임금을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험연구비 내에 편성되었던 연구개발비(260목)를 분리 계상함으로써 일관된 기준 하에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비중을 비교하였다.

연구용역 예산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 및 연구개발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예산 (A)	시험연구비(210-13목)		연구개발비 (260목) (D)	연구개발비 합계 (C+D)	연구개발비 비중 ((C+D)/A)
		연구개발비 제외한 시험연구비(B)	시험연구비 내 연구개발비 (C)			
2014	47,504	18,560	11,265	17,679	28,944	60.9
2015	38,907	10,948	11,926	16,033	27,959	71.9
2016	43,928	16,121	11,274	16,533	27,807	63.3
2017	42,881	14,995	11,309	16,577	27,886	65.0
2018	39,191	13,469	-	25,722	25,722	65.6

주: 1. 「2018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에 따라 시험연구비 내 연구개발비, 상용임금을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하여 이전 연도들과 2018년 예산과의 차이 발생
 2. 전체 예산 =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비 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자료: 기상청

만약 자체적인 인력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거나 외부 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일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 수행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18년 12월 31일 기준 기상청 시험연구비 편성기관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현원 277명 중 연구직 구성이 118명이며, 공무원 을 포함한 전체 현원 492명 중 64.2%인 316명이 석·박사 인력이므로 자체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시험연구기관별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공무원			공무직	
		소계	연구직	일반직		
국가기상위성센터	현원	101	50	20	30	51
	석박사 인력	59	29	20	9	30
	비중	58.4	58.0	100	30.0	58.8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외부 용역비의 비중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연구개발출연금을 지원한 취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체연구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관기관이 출연금의 대부분을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면서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의 편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위: 명, %)

구분	총계	공무원			공무직	
		소계	연구직	일반직		
국가태풍센터	현원	33	14	4	10	19
	석박사 인력	17	10	4	6	7
	비중	51.5	71.4	100	60	36.8
수치모델링센터	현원	78	50	27	23	28
	석박사 인력	58	36	27	9	22
	비중	74.4	72.0	100	39.1	78.6
기상레이더센터	현원	58	44	5	39	14
	석박사 인력	27	16	5	11	11
	비중	46.6	36.4	100	28.2	78.6
국립기상과학원	현원	203	110	55	55	93
	석박사 인력	137	65	55	10	72
	비중	67.5	59.1	100	18.2	77.4
지진화산연구과	현원	19	9	7	2	10
	석박사 인력	18	8	7	1	10
	비중	94.7	88.9	100	50	100
합계	현원	492	277	118	159	215
	석박사 인력	316	164	118	46	152
	비중	64.2	59.2	100.0	28.9	70.7

주: 1. 2018.12.31. 기준

2. 공무원 인원은 해당 기관(과)의 전체 인원으로, 공무직은 시험연구비가 포함된 사업 대상인원임
자료: 기상청

따라서 국가시험연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성이 높은 연구 사업의 특성과 시험연구기관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기상청은 자체연구의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험연구와 연관성이 낮은 경비에 지출하는 집행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험연구비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통합된 9개 세목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기상청이 수행한 일부 사업에서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타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통합된 9개 세목 이외의 비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은 국가태풍센터의 태풍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태풍예보지원시스템 개선, 예보관 교육훈련 및 태풍 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시험연구비 역시 이러한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사업의 시험연구비 세부내역 중 ‘행정역량 강화 순회교육 참석’, ‘코칭리더 역량강화과정 참석’,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등은 시험연구비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국가태풍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 관련 비용이 시험연구비에서 사용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 실태라 할 수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경우에도, 시험연구비를 활용한 자체연구에 비해 외부 용역에 의한 연구과제 추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교육비, 세미나 강의료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 실태(예시)]

(단위: 천원)

연구기관명	시험연구비	금액	세부내역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73,000	8,152	국가태풍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 관련 경비
		1,242	- 행정역량 강화, 코칭리더 역량강화 과정 참석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15,105	5,453	교육비 및 세미나 강의료 관련 경비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이, 기상청에서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교육훈련, 국제협력, 자체행사 등의 경비를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향후 시험연구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⁴⁾

4) 한편, 시험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은 ‘시험연구’의 범위가 모호한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서는 시험연구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상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체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청은 2018년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상용 슈퍼컴운영,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등 11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상청의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18년 예산현액 576억 3,300만원 중 550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합 계	56,786	56,786	272	630	57,633	55,068	1,875	693	95.5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708	708	0	0	708	661	0	47	93.4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883	5,883	0	55	5,883	5,798	0	85	98.6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502	502	0	0	502	492	0	10	98.0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	17,745	17,745	0	96	17,841	15,970	1,562	309	89.5
기상용슈퍼컴운영	26,198	26,198	0	398	26,596	26,564	0	34	99.9
무선FAX시스템 운영	310	310	0	0	310	299	0	11	96.4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1,670	1,670	0	61	1,731	1,621	0	110	93.6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1,646	1,646	0	9, △9	1,646	1,623	0	23	98.6
항공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86	1,386	272	20	1,678	1,315	313	51	78.4
기상연구시스템	370	370	0	0	370	370	0	0	100.0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8	368	0	0	368	355	0	13	96.5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정보화사업 예산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상청은 예보시스템 구축과 개선, 유지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총 5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38건의 계약에서 7억 8,4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세부사업명	계약건수	발주금액	낙찰액	낙찰차액
국가태풍센터 운영(1131-301)	1	320	308	12
수치예보시스템개선(1140-500)	3	468	456	12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40-501)	4	4,957	4,706	252
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1140-502)	2	392	380	12
무선FAX시스템운영 (1335-500)	1	300	291	9
기상정보통신시스템운영 (1239-500)	13	5,523	5,328	195
기상용슈퍼컴운영(1239-502)	1	248	208	40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1433-500)	1	910	778	132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1433-501)	4	1,320	1,276	44
기상연구시스템 (4133-500)	1	100	95.7	4.3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134-500)	3	306	279	27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132-500)	4	1,162	1,117	45
합계	38	16,006	15,223	784

자료: 기상청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예산은 정보통신 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 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는 일체의 경비로서, 정보화예산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¹⁾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차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기상청은 기상정보 발표 건수 증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수신자 확대에 의해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미집행 시 기상 예·특보 관련 통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상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억 1,000만원의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통보(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1042, '18.10.5)하였다.

그러나 기상청은 승인 받은 전용액 외에 기상용슈퍼컴퓨터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집행지침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낙찰차액 내역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낙찰차액 사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예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비고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40-501)	2018년 선진예보 시스템구축	3,082	59	○ 공공요금및체세 부족액 충당(37) ○ 불용(22)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승인 (210)
	2018년도 선진예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318	163	○ 공공요금및체세 부족액 충당(147) ○ 불용(16)	
	2018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감리	68	18	○ 공공요금및체세 부족액 충당(18)	
기상용슈퍼컴 운영 (1239-502)	기상용 슈퍼컴퓨터 교체 상세기획연구	208	40	○ 조달수수료 납부(2) ○ 슈퍼컴퓨터 사용량 증가와 전산 장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 으로 공공요금및체세로 전용(38)	자체 전용

1)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의 이·전용 금지 및 낙찰차액의 불용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pp. 92~93).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약명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비고
기상연구시스템 (정보화) (4133-500)	2018년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용역	95.7	4.3	○ 과학원 홈페이지 장애 개선 사 업비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 비로 세목조정하여 총당(3.49) ○ 수수료(일반수용비) 부족분 세목조정하여 총당(0.81)	자체 전용

자료: 기상청

따라서 기상청은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업 목
적에 부합하지 않게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¹⁾은 기상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상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상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및 날씨경영 활성화를 통해 기상산업 시장을 확대하며, 기상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비를 제외한 2018년 예산현액 32억 1,800만원 중 32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산업 활성화	9,663	9,663	0	0	9,663	9,657	0	6	13,377
기상산업육성	1,429	1,429	0	0	1,429	1,423	0	6	1,437
기상기업지원	1,789	1,789	0	0	1,789	1,789	0	0	2,482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운영	6,445	6,445	0	0	6,445	6,445	0	0	9,458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기상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 아이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431-301

템 개발비 및 창업지원금 지원, 기상기업 종합상담지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한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6~2018) 기상기업 전주기 지원사업 중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청년창업지원 건수 대비 실제 창업 성공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편('16년 12.5%, '17년 16.7%, '18년 25%)이며, 산업재산권 등록이나 특허 출원 등 사업화 건수도 매년 감소하여 '18년에는 사업화 실적이 0건으로 부진하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²⁾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입주기업 중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건수(9건) 대비 창업성공률(4건)은 44.4%로 높은 편이나,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6년 86억 3,600만원에서 '18년 45억 8,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신규 일자리창출 건수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회계연도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관련 집행 및 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개, %)

구분		2016	2017	2018
예산액		826	826	1,175
결산액		796	818	1,168
청년 창업 지원	지원 건수	8건	6건	12건
	창업 건수	1건	1건	3건
	창업 성공률(%)	12.5	16.7	25.0
사업화 건수 (산업재산권 등록, 특허 출원 등)		8건 등록 6건 출원	2건 등록	0건
기상 기업 성장 지원 센터	지원 건수 (창업지원 건수)	19건 (2건)	26건 (3건)	23건 (4건)
	창업 건수	-	2건	2건
일자리창출 건수		-	9개	6개
매출액		8,636	7,404	4,584
사업화 건수 (산업재산권 등록, 특허 출원 등)		14건 등록 29건 출원	20건 등록 11건 출원	25건 등록 23건 출원

주: 사업화 건수(산업재산권)의 경우 센터 입주기업 간 일부 중복된 사례가 있음
자료: 기상청

2)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는 영세한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보육·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자체역량이 부족한 국내 기상기업 중 수출유망 기상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상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소 기상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성과를 살펴보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30개 기상기업 중 26개 기업에서 해외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의 해외수출액은 '16년 \$3,695,470에서 '18년 \$2,866,7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기술개발 건수와 사업화 건수 등에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8회계연도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집행 및 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USD, 회)

구분	2016	2017	2018
예산액	234	406	406
결산액	233	397	386
수출 지원 건수	10건	10건	10건
해외수출 건수	10건	8건	8건
해외수출액	\$ 3.70M ¹⁾	\$ 3.33M	\$ 2.87M
기술개발 건수	2건	2건	2건
사업화(지식재산권) 건수	1건	1건	2건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수	9회	8회	10회
상담액 ²⁾	\$ 41M	\$ 42M	\$ 206M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1건	1건	4건
기술현지화 지원 국가 수	2개 국가	2개 국가	2개 국가

주: 1) M은 백만 달러

2) 상담액은 국제박람회 상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잠재수요액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장비 관련 국내 수요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을 중심으로 매우 한정된 상황이고, 기상업체의 대부분은 인력수급과 판로개척,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상품개발 및 수출대상국 선정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등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7년 기준 국내 기상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4,077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과 기상정보와의 융합 등 미래 기상산업에 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변화된 기술 및 산업 환경 하에서 국내 기상업체들이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기상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¹⁾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APEC 기후센터(APCC)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82억 2,900만원은 전액 출연되었으며, APEC 기후센터는 출연받은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7억 7,600만원 중 83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APEC 기후센터 출연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APEC 기후센터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R&D)	8,229	8,229	8,229	8,229	547	8,776	8,393	0	383	95.6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는 2005년 11월 제13차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APEC 회원국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상청은 2006년부터 APCC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²⁾ 특히, APCC를 유치한 부산광역시는 2009년부터 독립청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P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최적의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아태지역 재해 경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기후정보 활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334-301

2) APEC 기후센터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호에 의거하여 '15년 1월 30일부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용 및 실효성 있는 기후-융합연구 추진을 통한 기후과학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아태지역 실시간 고품질 기후 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지역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태지역 기후정보 서비스,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의 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아태지역 실시간 고품질 기후 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874	874	0	0	874	874	0	0	874
지역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428	428	0	0	428	428	0	0	267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275	275	0	0	275	275	0	0	125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162	162	0	0	162	162	0	0	-
기관운영비	6,490	6,490	0	0	6,490	6,490	0	0	6,140
합 계	8,229	8,229	0	0	8,229	8,229	0	0	7,406

자료: 기상청

하지만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출연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APEC 기후센터 출연의 근거로 「기상법」 제32조와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등을 들고 있으며,³⁾ 그중 APEC 기후센터 비용지원의

3)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들은 보조금 등 일반적인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이며, 상대적으로 집행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출연받고 있는 APEC 기후센터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2조4)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와 같은 법률상 교부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상청은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 등 APEC 기후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APEC 기후센터 혁신 방안을 마련(19.1.31)하였으며, 기관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립기상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제공과 국내 기여 강화 등 고유 핵심업무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APEC 기후센터의 법적 지위는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 출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APEC 기후센터의 설립과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동 기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APEC 회원국 간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6~2018) APEC 기후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국제공동연구 R&D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APEC 회원국 및 타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상법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기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가. 현황

기상청은 2018년 본부 직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¹⁾ 예산액인 396억 4,100만원 중 11억 2,100만원을 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385억 2,000만원 중 36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기상청 본부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39,641	39,641	0	△1,121	38,520	36,515	94.8	0	2,005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본부 인건비에서 소속기관 인건비로의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운영기본계획 등 인력충원계획 및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을 통해 본부·소속기관 간 인건비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최근 4년간 본부 인건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19억 6,600만원, 2016년 9억 1,300만원, 2017년 7억 4,000만원, 2018년 11억 2,100만원의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16년과 2018년의 경우, 본부 인건비 불용액이 각각 17억 5,200만원, 20억 500만원으로 인건비 불용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7101-100

[2015~2018년 본부 인건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31,362	31,362	0	△1,966	29,396	29,340	93.5	99.8	0	55
2016	32,986	32,986	0	△913	32,074	30,322	92.0	94.5	0	1,752
2017	34,284	34,284	0	740	35,024	34,985	102.0	99.9	0	39
2018	39,641	39,641	0	△1,121	38,520	36,515	92.1	94.8	0	2,005

자료: 기상청

구체적으로, 2018년 기상청 본부 인건비의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 11억 2,100만원을 전용하여 부산지방청 인건비로 6억 6,800만원, 광주지방청 인건비로 2억 5,300만원, 수도권기상청 인건비로 8,700만원, 대전지방청 인건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600만원은 부산지방청 직원의 연가보상비와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본부 인건비 집행현황에서도 직제개정 및 업무이관에 따른 인건비 전용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으로의 인건비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상청 본부 인건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전용	본부 인건비 (7101-100)	87	수도권기상청 인건비 (7107-100)	수도권청, 부산청, 광주청, 대전청의 직원 보수 부족분을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에서 전용
		668	부산지방청 인건비 (7107-101)	
		253	광주지방청 인건비 (7107-102)	
		57	대전지방청 인건비 (7107-104)	
		42	부산지방청 인건비 (7107-101)	부산청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에서 충당
		1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00)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지출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액을 기타직보수에서 전용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인원은 기상청의 직제상 기준인원(17년 6월 기준)이고 당해 연도 집행 시 인원은 총액인건비제 등 운영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기준정원과 실지급 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며, 퇴직예정인 공로 연수자와 육아휴직자 중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 등 인력변동 요인으로 인해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명예퇴직자와 면직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미집행된 부분에 더해, 전년 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본부 인건비의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의 연례적인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 충원 및 운영계획이 미흡하거나, 인력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인사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 산정과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연례적인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정성영 예산분석관
어예원 예산분석관

지원 | 이지은 행정실무원
김승미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92-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